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 · 음성확인제 지침

제3-2판

2022. 1. 25(화)



중앙방역대책본부

< 목 차 >

1. 개요	1
2. 증명서 발급대상 및 방법	3
3-1. 요약	3
3-2. 대상별 증명서 발급 방법	4
가. 접종완료자	4
나. 코로나19 음성 확인자	6
다.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완치자)	11
라. 코로나19 감염력이 있는 접종완료자	13
마. 예외 적용자	15
3-3. 예외 적용자 등록방법(보건소)	25
3-4. 기타 사항	26
3. 대상자별 증명서 확인방법	27
가. 접종완료자	29
나. 코로나19 음성 확인자	31
다.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완치자)	32
라. 코로나19 감염력이 있는 접종완료자	33
마. 18세 이하 청소년	33
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예외 적용자	34

4. 관리방안	35
가. 지도 점검 및 단속	35
나. 증명서 미확인에 대한 조치	35
다. 증명서 위·변조에 대한 조치	36
라. 접종증명·음성확인 관련 증명서별 진위 확인 방법	37
5. 사용자별 가이드	39
1. 지자체 담당자용	39
2. 사업장용	41
3. 시설 이용자용	46
4. 의료기관용	50
6. 주요 질의응답(FAQ)	52
7. 주요 서식	76
8. 붙임	90
1.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시설	90
2. 호흡기전담클리닉 지정기관(총 43개소)	92
3. 관련 법률	94

□ 도입 목적

- 11.1일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라 접종 완료자 등으로 다중이용시설 등의 이용을 허용하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 근거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9조, 제49조의2, 제83조

□ 추진 경과

- 관계부처 합동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발표(10.29)
-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에 따라 1차 방역패스 적용 실시(11.1~)
-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라 적용 대상시설 조정('21.12.6, 12.16, 12.31, '22.1.18)

□ 적용대상

- (대상자) 19세 이상 성인('03.12.31. 이전 출생자)
 - '2022.3.1.부터는 2009.12.31.일 이전 출생자(13세 이상)로 방역패스 적용 대상 확대
 - 접종 완료자 및 미접종자 중 ①코로나19 음성확인자, ②불가피한 일부 예외* 등을 위험도 및 필수성에 따라 예외범위 인정
- *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완치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미접종자, 접종금기자
- (대상시설) 고위험 (실내)다중이용시설 및 감염취약시설(붙임1 참조)
 -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대규모 행사·집회

□ 접종증명 · 음성확인제에 따른 시설별 이용가능 대상

구 분	접종완료자 (완치자 포함)	미접종자 중 예외 인정범위		
		코로나19 음성	의학적 사유	18세 이하 ¹⁾
유흥시설	○	×	×	×
경마·경륜·경정/카지노	○	○	×	×
실내체육시설	○	○	○	○
노래연습장	○	○	○	○
목욕장	○	○	○	○
입원자·입소자 면회	○	○	×	×
노인·장애인 이용시설	○	○	△ ²⁾	△ ²⁾
식당·카페	○	○	○	○
멀티방(오락실 제외)	○	○	○	○
PC방	○	○	○	○
(실내)스포츠 경기(관람)장	○	○	○	○
파티룸	○	○	○	○
안마소·마사지업소 ⁴⁾	○	○	○	○
대규모 행사 (50인 이상 300인 미만)	○	○	○	△ ³⁾
학원(관악기, 노래, 연기) 등 ⁵⁾	○	○	○	○

1) 2009.12.31.이전 출생자는 '22.3.1.부터 예외 적용에서 제외

2) 당사자 본인 이용 시 예외적인 경우 허용 가능(예: 12세 미만 등)

3)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학교 행사 등은 12~18세의 방역패스 예외 인정

4)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5) 서울행정법원의 방역패스 적용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결정에 따라
본안소송 판결 전까지 학원(관악기, 노래, 연기)은 방역패스 효력 정지

※ 소관부처·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강화된 방역수칙 적용 가능

II

증명서 발급 대상 및 방법

1 요약

□ 대상별 발급방법 및 확인 방식

대상자	발급방법(시행일시)	유효기간	확인방식
접종완료자 추가접종	1) 전자 증명서 * COOV, 네이버, 카카오톡 등 2) 종이 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예방접종확인서) 3) 예방접종 스티커	180일 (6개월) -	1) 전자 증명서 QR코드 인식 *전자출입명부와 동시확인 가능 2) 종이 증명서 본인확인 *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3) 예방접종 스티커 확인
미접종 완치자 접종완료 완치자	1) 종이 증명서 (격리해제확인서) 2) 전자 증명서	180일 (6개월) -	1) 종이 증명서 본인확인 *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2) 전자 증명서 본인확인
코로나19 음성 확인자	1) 신속항원검사 결과통지서 1) 종이 증명서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1일	1) 종이 증명서 본인확인 *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2) PCR 음성 결과통지서 2-1) 문자 통보(~'22.2월말) 2-2) 종이 증명서 (PCR 음성 확인서) 2-3) 전자 증명서	2일	1-1) 문자 통지서 *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1-2) 종이 증명서 본인확인 *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2) 전자 증명서 본인확인
예외자 (의학적 사유) 기타 건강상 이유	1) 종이 증명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 2) 전자 증명서	없음 180일 (6개월)	1) 종이 증명서 본인확인 *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2) 전자 증명서 본인확인

* 신속항원검사는 검사기관에서 종이 증명서만 즉시 발급 가능

** 예외자 중 18세 이하에 대해서는 별도 발급 증명서 없음(본인 신분증으로 증명)

2 대상별 증명서 발급 방법

가. 접종완료자

□ 대상

- (2차 접종자) 국내 또는 해외에서 2차 접종을 완료*한 자

* 아스트라제네카·모더나·화이자는 2차 접종, 안센은 1차 접종 후 14일~180일

※ 해외접종자의 경우 「코로나19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접종력 등록 및 확인서 발급 안내(코로나19예방접종추진단-4696(2021.10.05)」 참조

- (3차 접종자) 2차 접종 후 3차(부스터) 접종을 완료한 자

□ 유효기간

- (2차 접종자) 접종 완료 후 14일이 경과¹⁾한 날부터 180일까지²⁾

※ 2차접종 증명의 유효기간 기산방법은 아래와 같음

(예시) '21.11.1.일 2차접종한 경우,

1) 2차접종(11.1.) 후 14일은 '21.11.15일로, '21.11.16일부터 접종증명 효력이 인정됨

2) 2차접종(11.1.) 후 180일은 '22.4.30일로, '22.4.30일 24시까지 접종증명 효력이 인정됨

- (3차 접종자) 추가 접종한 날부터 효력 인정(유효기간 만료일 없음)

□ 증명서 종류별 발급 방법

1) 종이 증명서(예방접종증명서, 예방접종확인서*)

☞ <서식 1 : 예방접종증명서>, ☞ <서식 2 : 예방접종확인서>

* 해외 2차 접종완료자의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확인서

- (발급주체) 접종기관(예방접종센터, 위탁의료기관) 또는 보건소, 온라인(본인), 주한미군*

* 주한미군 주둔지 내 외국인 접종자는 주한미군에서 별도 확인서 발급

- (발급절차) ①접종기관·보건소·주민센터 방문 발급 또는 ②온라인을 통한 본인 직접 출력·발급

* 해외 2차 접종완료자 중 일부 대상자는 온라인 발급이 제한될 수 있음

- **(방문)** 대상자가 신분증 지참 후 접종기관·보건소 방문, 기관 담당자가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에서 대상자 본인 확인 후 발급
- **(온라인)** 신청인이 스스로 정부24 또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https://nip.kdca.go.kr>) 또는 방역패스 통합 확인서 발급 누리집 (<https://pedpass.kdca.go.kr>)에서 직접 출력·발급

2) 전자 증명서

 <서식 3 : 접종증명·음성확인 전자증명서>

- **(발급주체)** 질병관리청(COOV앱, COOV앱 연동 전자출입명부 플랫폼*)
- * 전자출입명부 플랫폼: 네이버, 카카오, 토스, PASS앱(SKT, KT, LG)
- **(발급절차)** COOV앱(또는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을 통해 본인인증 후
접종 증명서 발급

3) 예방접종 스티커

- 행정복지센터에서 2차 또는 3차 접종(부스터)완료 확인 후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에 부착·배부하는 예방접종 스티커

<신분증 뒷면에 부착된 스티커 (예시)>			
접종완료 21.06.04	제ABC00001호 홍길동  질병관리청	추가접종 21.12.20	제ABC00001호 홍길동  질병관리청

- **(발급주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발급절차)** 신분증* 지참 후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방문
 -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분증 중에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 ** 「출입국관리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 등 카드 형태로 제작된 신분증
- **(증명내용)** 대상자 성명, 접종완료일, 문서대장번호*
 - * 종이 예방접종 증명서의 문서대장번호와 동일하며, 개별 문서대장번호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으로 확인 가능

※ 지역별 코로나19 검사(PCR, 신속항원검사)은 진단검사체계 개편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나. 코로나19 음성 확인자

나-①.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 확인자

□ 대상

- 신속항원검사 적용 지역에서 신속항원검사(RAT) 음성 판정을 받은 자
- * 광주·전남·평택·안성 지역에 우선 적용('22.1.26~)하고, 추후 확대 예정

□ 유효기간

- (종이 증명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24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검사당일과 그 다음날까지) 효력 인정
- * (인정범위) 우선 적용 지역(광주·전남·평택·안성)에서 발급받은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는 전국 방역패스 적용 대상 시설에서 인정, 우선적용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자부담 신속항원검사 시 음성확인서도 인정

※ 유효기간 계산 예시

- '22.1.25. 10:00에 음성확인서(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 1.26일 24시까지 인정
- '22.1.25. 23:00에 음성확인서(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 1.26일 24시까지 인정

□ 증명서 발급 방법

1)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 <서식 11 :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보건소용)>

- (발급주체) 보건소(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 (발급절차) 대상자가 신분증 지참 후 방문, 신속항원검사 후 '음성확인서' 즉시 발급(종이)

2) 호흡기전담클리닉 자체 '소견서'

- (발급주체) 검사기관(호흡기전담클리닉 등 민간의료기관)
- (발급절차) 대상자가 신분증 지참 후 방문, 신속항원검사 후 검사기관에서 '소견서'* 즉시 발급(종이)
- * 소견서는 검사기관별 양식이 다양하나, 필수정보(검사일, 의료기관명 등) 포함 필요

※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는 문자 통보 또는 전자증명서로 확인 불가

시스템을 통한 음성확인서 발급방법은 추후 검토 예정

나-②. PCR 검사 결과 음성 확인자

□ 대상

- 코로나19 유전자 진단검사*(PCR) 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후 2일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유효기간

- (문자 통지서) 음성 결과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효력 인정

* 문자통지서에 유효기간이 표시되는 경우 해당 기간까지

※ 유효기간 계산 예시

- '21.11.12. 10:00에 결과 통보된 경우, '21.11.14일 24시까지 인정
- '21.12.20. 23:00에 결과 통보된 경우, '21.12.22일 24시까지 인정

- (종이 증명서) 음성 결과 등록(보고)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효력 인정

□ PCR 음성 확인 증명서 발급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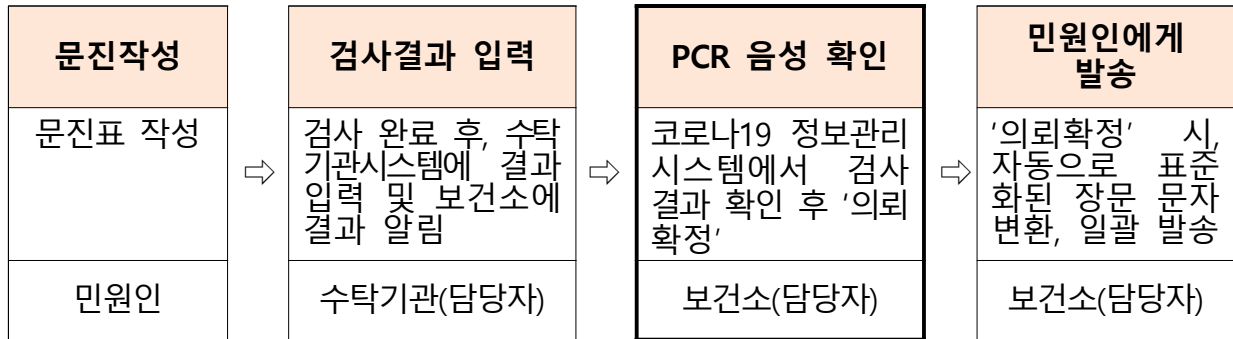
【 보건소 검사 】

1) 문자 통지서(한시적 적용)

※ '문자 통지서' 방식은 '전자증명서' 도입으로 2월말까지만 한시 적용

- (발급주체) 보건소(선별검사소 관할)
 - (발급절차) 음성판정 결과를 보건소 담당자가 표준화된 'PCR 음성 확인 문자' 대상자에게 일괄 발송(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서 '의뢰확정'된 대상자에 한해 발급 가능
- * PCR 음성 결과 효력 담보를 위해 가급적 검사일로부터 1일 이내 코로나19정보 관리시스템 내 '검사의뢰확정' 필요

<발급절차 흐름도>



- **(증명내용)**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정보가 포함된 음성 확인 문자 통지서(표준화된 'PCR 음성 확인문자')

<보건소 PCR 음성 확인 문자 통지서(예시)>

(발신번호 02-1233-4567, 발신일시 `21.11.14. 10:00)

홍길동님(98.10.20/남) 코로나19 PCR 검사결과 음성입니다(검사일자 21.11.13).

- ① 본 문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출입을 위한 PCR 음성확인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② 본 문자를 통한 PCR 음성확인 유효기간은 `21.11.16. 24:00까지*입니다.
(문자를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인정)
- ③ 본 문자를 위·변조하거나 사용할 경우, 위·변조한 사람을 물론이고, 위·변조된 문자를 사용하는 사람도 "형법"상 공문서 위·변조 및 위·변조 문서의 행사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10년 이하의 징역) 대상이 될 수 있음에 유의 바랍니다.

-서울 ○○보건소(02-1233-4567)-

2) 종이 증명서

📄 <서식 4 : 코로나 19 PCR 음성확인서_보건소용>

- **(발급주체)** 전국 보건소
- **(발급절차 및 시기)** ① 보건소 방문 발급 또는 ② 온라인을 통한 본인 직접 출력·발급
 - **(방문)** 대상자가 신분증 지참 후 보건소 방문, 담당자는 음성판정 결과를 증명하는 '음성확인서' 발급(서면)
 -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서 '의뢰확정'된 대상자에 한해 발급 가능

- (온라인) 방역패스 통합 확인서 발급 누리집을 통해 본인인증 후 종이 '접종증명·음성확인제 통합 증명서' 출력·발급 가능

3) 전자 증명서

☞ <서식 3 : 접종증명·음성확인 전자증명서>

- (발급주체) 질병관리청(COOV앱, COOV앱 연동 전자출입명부 플랫폼*)
 - * 전자출입명부 플랫폼: 네이버, 카카오, 토스, PASS앱(SKT, KT, LG)
- (발급절차) COOV앱(또는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을 통해 본인인증 후 전자 증명서 발급

【 의료기관 검사 】

1) 문자 통지서(한시적 적용)

※ '문자 통지서' 방식은 '전자증명서' 도입으로 2월말까지만 한시 적용

- (발급주체) PCR 검사 시행 의료기관
- (발급절차) 음성판정 결과를 해당 의료기관에서 표준화된 'PCR 음성 확인 문자'로 대상자에게 발송
- (유효기간) 결과통보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효력 인정
 - * PCR 음성 결과 효력 담보를 위해 가급적 검사일로부터 1일 이내 검사결과 등록(통보) 필요

<의료기관 PCR 음성 확인 문자 통지서(예시)>

(발신번호 02-1233-4567, 발신일시 `21.11.14. 10:00)

홍길동님(98.10.20/남) 코로나19 PCR 검사결과 음성입니다(검사일자 21.11.13).

- ① 본 문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출입을 위한 PCR 음성확인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② 본 문자를 통한 PCR 음성확인 유효기간은 문자를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인정됩니다.
- ③ 본 문자를 위·변조하거나 사용할 경우, 위·변조한 사람을 물론이고 위·변조된 문자를 사용하는 사람도 "형법"상 사문서 위·변조 및 위·변조 문서의 행사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5년 이하의 징역) 대상이 될 수 있음에 유의 바랍니다.

-○○ 병원(02-1233-4567)-

2) 종이 증명서

 <서식 4-1 :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_의료기관용>

- (발급주체) 검사받은 의료기관
 - (발급절차 및 시기) 대상자가 신분증 지참 후 의료기관 방문하여 음성판정 결과를 증명하는 '음성확인서' 발급(서면)
 - (유효기간) 결과 등록(보고, 통보)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효력 인정
- * 시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증명서에 기재된 검사결과 등록일 +2일째 자정까지 효력
(예 : 11.1일이 검사결과 등록일인 경우 11.3일 자정까지 효력인정)

다.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완치자)

□ 대상

○ PCR 검사로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 조건을 충족한 자

* 격리해제 조건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판) 제10-3」을 준용

※ 격리 해제 조건(「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판) 제10-3」)

○ 무증상 확진환자

- 확진 후 10일 경과하고, 임상증상이 발생하지 않을 때
-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이고, 임상증상이 발생하지 않을 때

○ 유증상 확진환자

- 증상 발생 후 최소 10일 경과하고, 24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일 때
- 증상 발생 후 최소 10일 경과하고, 48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일 때
-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이면서,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일 때

□ 유효기간

- 격리해제일로부터 180일까지(전자증명서는 별도 표시일까지)

□ 증명서 종류별 발급 방법

1) 종이 증명서

☞ <서식 5 : 격리해제확인서(코로나19 대응지침(지자체용, 제10-3판 기준)>

○ (발급주체) 관할 보건소*

* 격리통보, 확진자관리, 격리해제통보 등 실제 격리업무를 수행한 보건소

○ (발급절차 및 시기) ①보건소 방문 발급 또는 ②온라인을 통한 본인 직접 출력·발급

- (방문) 대상자가 신분증 지참 후 신고지 보건소 방문, 담당자는 격리 해제 기준 도달하여 격리 해제된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격리해제 확인서' 발급(격리해제일 기준)
- (온라인) 방역패스 통합 확인서 발급 누리집을 통해 본인인증 후 종이 '접종증명·음성확인제 통합 증명서' 출력·발급 가능

2) 전자 증명서

 <서식 3 : 접종증명·음성확인 전자증명서>

○ (발급주체) 질병관리청(COOV앱, COOV앱 연동 전자출입명부 플랫폼*)

* 전자출입명부 플랫폼: 네이버, 카카오, 토스, PASS앱(SKT, KT, LG)

○ (발급절차) COOV앱(또는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을 통해 본인인증 후 전자 증명서 발급

- 격리해제일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 진단일을 기준시점으로 계산하여 전자증명서 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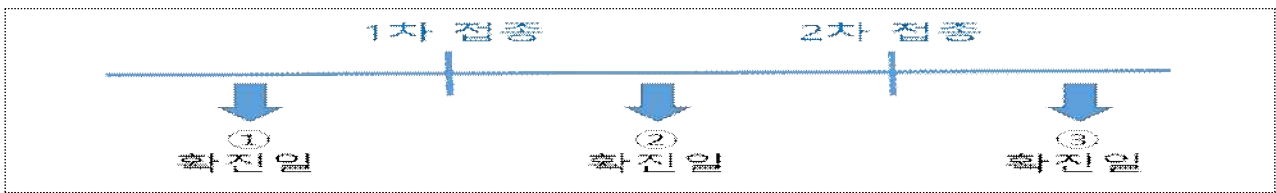
* 진단일 정보는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정보 관리시스템에서 관리

- 전자 증명서(완치 확인서)는 진단일 기준 10일 후부터 발급되며, 180일까지 유효함

라. 코로나19 감염력이 있는 접종완료자(접종완료 완치자)

□ 대상

- 2차 접종 완료자(안센은 1차 접종) 중 PCR 검사로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 조건을 충족한 자
- 확진시점과 접종(1차, 2차)간의 선후관계는 고려하지 않음(아래 그림에서 ①, ②, ③ 확진자가 2차 접종(안센 1차) 완료한 경우 대상에 포함)



□ 유효기간

- ①, ②의 경우 2차 접종(안센은 1차 접종) 완료 후 14일 경과한 날부터, ③의 경우 격리해제 조건을 충족한 날부터 효력인정(유효기간 만료일 없음)

□ 증명서 종류별 발급 방법

1) 종이 증명서

☞ <서식 6-1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접종완료 완치자)>

- (발급주체) 관할 보건소*

* 격리통보, 확진자관리, 격리해제통보 등 실제 격리업무를 수행한 보건소

- (발급절차 및 시기) ①보건소 방문 발급 또는 ②온라인을 통한 본인 직접 출력·발급

- (방문) 대상자가 신분증, 예방접종증명서, 격리해제서 지참 후 가까운 보건소 방문, 담당자는 2차 접종(안센은 1차) 완료 여부와 격리해제서를 확인 후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 발급

- (온라인) 방역패스 통합 확인서 발급 누리집을 통해 본인인증 후 종이 '접종증명·음성확인 통합 증명서' 출력·발급 가능

2) 전자 증명서

 <서식 3 : 접종증명·음성확인 전자증명서>

- (발급주체) 질병관리청(COOV앱, COOV앱 연동 전자출입명부 플랫폼*)
 - * 전자출입명부 플랫폼: 네이버, 카카오, 토스, PASS앱(SKT, KT, LG)
- (발급절차) COOV앱(또는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을 통해 본인인증 후 유효기간 만료일이 없는 전자 증명서(접종증명서) 발급

마. 예외 적용자

□ 대상

① 18세 이하 청소년 : '04.1.1. 이후 출생자

- 단, '22.3.1.부터 '09.12.31.일 이전 출생자도 방역패스 적용

②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참여자

- 국내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 19 백신의 임상시험 참여로 인해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자

③ 의학적 사유에 의한 예외 적용자

③-1.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자)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인한 예방접종 금기·연기 대상자로서 질병관리청에서 결정하여 해당 지자체에 통지한 대상자에 한함

- * 아나필락시스 반응, 혈소판감소성혈전증, 모세혈관누출증, 심근염·심낭염 등으로 관할 보건소·지자체를 통해 2차 접종 금기·연기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

③-2. (기타 건강상의 이유) 면역결핍자 또는 항암제·면역억제제 투여로 인해 백신접종 연기가 필요한 자

- 진단서 또는 소견서 상 면역결핍자 또는 항암제·면역억제제 투여로 인해 백신접종 연기가 필요하다고 명시된 경우에 한함

- ▶ 종교적 사유 등 개인 신념에 따른 접종 거부자, 경미한 부작용(발열, 통증 등) 및 불안감에 따른 접종 거부자는 불인정
- ▶ 면역글로불린 투여, 고열 등의 일시적인 사유나 계란 알레르기, 아토피 등은 불인정
- ▶ 방역상황,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전문가 및 관계 위원회 논의를 거쳐 지속 보완 예정

③-3. (예방접종 금기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21.11.29)」에 따른 “코로나19 백신의 구성물질에 아나필락시스 등 중증 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 진단서 상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어 ‘접종금기’가 필요하다고 명시된 경우에 한함

* 소견서는 인정하지 않음

- ▶ (화이자, 모더나) polyethylene glycol(PEG) 또는 관련 성분(molecules)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접종 금기대상에 포함, 트리스(히드록시 메틸) 아미노메탄 성분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모더나 접종 금기대상에 포함
- ▶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polysorbate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접종 금기대상에 포함

③-4. (인과성 근거 불충분(41) 판정자)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하였으나,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 자료 불충분으로 인과성 근거 불충분(4-1) 판정을 받은 경우

③-5. (이상반응 입원치료자)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증상이 발생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단, 예방접종 후 6주 이내에 입원치료 받은 사람에 한함)

- (증빙서류)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①진단서 및 ②입원확인서(접종일로부터 6주 이내 입원) 제출 필요

- ▶ 이상반응 의심증상의 종류, 이상반응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진단서상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이 있으면 인정

□ 유효기간

① 18세 이하 청소년('04.1.1 이후 출생자)

- '22.3.1부터는 12세 이하 청소년('10.1.1 이후 출생자)

② (코로나19 임상시험 참여자) 전자 또는 종이 증명서 발급시부터
(유효기간 만료일 없음)

③ 의학적 사유에 의한 예외 적용자

③-1.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자) 전자 또는 종이 증명서 발급시부터
(유효기간 만료일 없음)

③-2. (기타 건강상의 이유자) 전자 또는 종이 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80일까지

* 유효기간에 대한 효력개시는 '22.1.3일부터 적용되나, 확인서상 유효기간
설정/표기는 지침 시행일부터 표기하여 발급

③-3. (예방접종 금기자) 전자 또는 종이 증명서 발급시부터
(유효기간 만료일 없음)

③-4. (인과성 근거 불충분(41) 판정자) 전자 또는 종이 증명서 발급시부터
(유효기간 만료일 없음)

③-5. (이상반응 입원치료자) 전자 또는 종이 증명서 발급시부터
(유효기간 만료일 없음)

□ 예외 적용자별 증명서 발급 방법

① 18세 이하 청소년

- (증명서) 생년월일이 포함된 신분·연령('04.1.1. 이후 출생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 확인

* 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내 주민등록증 발급 확인서 신분증, 청소년증, 유효기간 내 청소년증(청소년증 발급확인서), 여권, 학교생활기록부 개인 신상 페이지(학교장 확인 필요), 학생증, 재학증명서, 재학 중인 학교에서 발급하는 신분증명서

** 영·유아, 어린이 등 육안으로도 명확히 18세 이하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신분증 확인 불필요

- 단, '22.3.1.부터 2009.12.31.일 이전 출생자도 방역패스 적용

②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참여자

1) 종이 증명서

☞ <서식 4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

- (발급주체) 전국 보건소
- (발급절차 및 시기) ① 보건소 방문 발급 또는 ② 온라인을 통한 본인 직접 출력·발급
- **(방문)** 대상자가 신분증과 임상시험참여 증명서* 지참 후 보건소 방문, 담당자는 본인 확인 후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 발급

☞ <서식 5: 임상시험참여증명서>

▶ (발급주체)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 (발급절차) 코로나19임상시험포털(<https://covid19.koreadclinicaltrials.org>)을 통해 임상시험 참여증명서 온라인 발급

- **(온라인)** 보건소에 방문하여 등록한 사람의 경우 방역패스 통합 확인서 발급 누리집을 통해 본인인증 후 출력·발급 가능

2) 전자 증명서

- (발급주체) 질병관리청(COOV앱, COOV앱 연동 전자출입명부 플랫폼*)

* 전자출입명부 플랫폼: 네이버, 카카오, 토스, PASS앱(SKT, KT, LG)

- (발급절차) COOV앱(또는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을 통해 본인인증 후 전자 증명서 발급

- 보건소에 방문하여 예방접종시스템에 '백신 임상시험 참여자'로 등록한 경우에만 발급 가능

③ 의학적 사유에 의한 예외 적용자

①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자

1) 종이 증명서

 <서식 6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

- (발급주체) 관할 보건소

- (발급절차 및 시기) ①보건소 방문 발급 또는 ②온라인을 통한 본인 직접 출력·발급

- (방문) 보건소는 코로나19 예방접종시스템에서 대상자 확인 후 발급
 -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이상반응 신고 후, 개별적으로 관할 지자체에서 연기·금기 통지(공문, 문자, 유선 등) 받은 대상자에 한함
 - 민간 의료기관에서 등록한 접종 금기·연기자의 경우는 예외 확인서 발급대상이 아님에 유의

※ 예방접종시스템 예방접종등록 화면에서 '피접종자 예진결과' 화면에서 증명서 출력 가능

질병청에서 접종 연기·금기 결정 → 예외확인서 발급 가능	민간 의료기관에서 접종 연기·금기 설정 → 예외확인서 발급 불가												
· 검색조건 주민등록번호 · 번호 Q 검색 ② 피접종자 검색결과 ③ 주민등록번호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메모 <table border="1"> <thead> <tr> <th>대상자 구분</th> <th>성명</th> <th>주민등록번호</th> </tr> </thead> <tbody> <tr><td> </td><td> </td><td> </td></tr> </tbody> </table> 피접종자정보 예방접종내역 기타대상자삭제 저장 ☒ 피접종자구분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 우편번호 상세주소 ☒ 휴대전화번호 ☒ 문자수신동의 ☒ 집 전화번호 ☒ 피접종자 예진결과 예진결과 등록내역 저장 ☒ 예진 결과 mRNA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심근염/심낭염 의심 신고사례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연기 대상자입니다.	대상자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 검색조건 주민등록번호 · 번호 Q 검색 ② 피접종자 검색결과 ③ 주민등록번호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메모 <table border="1"> <thead> <tr> <th>대상자 구분</th> <th>성명</th> <th>주민등록번호</th> </tr> </thead> <tbody> <tr><td> </td><td> </td><td> </td></tr> </tbody> </table> 피접종자정보 예방접종내역 기타대상자삭제 저장 ☒ 피접종자구분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 우편번호 상세주소 ☒ 휴대전화번호 ☒ 문자수신동의 ☒ 집 전화번호 ☒ 피접종자 예진결과 예진결과 등록내역 저장 ☐ 예방접종 가능 ☐ 예방접종 연기 ☒ 예방접종 금기 ☐ 백신의 구성물질에 심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 발생 ☒ 1차 접종 후 마나필락시스 발생	대상자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상자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상자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 (온라인) 보건소 방문·등록 절차 없이, 접종 연기·금기 통지를 받은 대상자는 방역패스 통합 확인서 발급 누리집을 통해 본인인증 후 출력·발급 가능

2) 전자 증명서

※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은 향후 단계적으로 개통 예정

○ (발급주체) 질병관리청(COOV앱, COOV앱 연동 전자출입명부 플랫폼*)

* 전자출입명부 플랫폼: 네이버, 카카오, 토스, PASS앱(SK, KT, LG)

○ (발급절차) COOV앱(또는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을 통해 본인인증 후 전자 증명서 발급(예방접종시스템에서 자동 연동)

② 기타 건강상의 이유 해당자

1) 종이 증명서

 <서식 6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

○ (발급주체) 전국 보건소

○ (발급절차 및 시기) ① 보건소 방문 발급 또는 ② 온라인을 통한 본인 직접 출력·발급

- **(방문)** 대상자가 신분증·진단서 지참 후 보건소 방문한 경우, 진단서·소견서 상 면역결핍자 또는 항암제·면역억제제 투여로 인해 백신 접종 연기가 필요하다고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발급
- 담당자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상 ①진단명과 해당 질환으로 인한 ②백신접종 연기에 모두 해당하는지 확인* 후 발급
- 진단서·소견서는 30일 이내에 발급된 것만 인정
- 확인서 발급시 유효기간란에 유효기한 만료일*을 반드시 기재
- * 유효기한 만료일 : 발급일로부터 6개월(180일)
- **(온라인)** 보건소에 방문하여 등록한 사람의 경우 방역패스 통합 확인서 발급 누리집을 통해 본인인증 후 출력·발급 가능

2) 전자 증명서

 <서식 7 : 접종증명·음성확인 예외확인서(전자증명서)>

○ (발급주체) 질병관리청(COOV앱, COOV앱 연동 전자출입명부 플랫폼*)

* 전자출입명부 플랫폼: 네이버, 카카오, 토스, PASS앱(SKT, KT, LG)

○ (발급절차) COOV앱(또는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을 통해 본인인증 후 전자 증명서 발급

- 보건소에 방문하여 예방접종시스템에 '기타 건강상의 이유'로 등록한 경우에만 발급 가능

③ 예방 접종 금기자

1) 종이 증명서

 <서식 6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

○ (발급주체) 전국 보건소

○ (발급절차 및 시기) ①보건소 방문 발급 또는 ②온라인을 통한 본인 직접 출력·발급

- **(방문)** 대상자가 신분증·진단서 지참 후 보건소 방문한 경우, 진단서 상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어 ‘접종금기’가 필요하다고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발급 (소견서는 인정하지 않음)

- ▶ (화이자, 모더나) polyethylene glycol(PEG) 또는 관련 성분(molecules)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접종 금기대상에 포함, 트리스(히드록시메틸) 아미노메탄 성분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모더나 접종 금기대상에 포함
- ▶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polysorbate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접종 금기대상에 포함

- 담당자는 진단서 상 ①백신 구성물질에 중증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과 ②접종금기에 모두 해당하는지 확인 후 발급
- (온라인) 보건소에 방문하여 등록한 사람의 경우 방역패스 통합 확인서 발급 누리집을 통해 본인인증 후 출력·발급 가능

2) 전자 증명서

☞ <서식 7 : 접종증명·음성확인 예외확인서(전자증명서)>

○ (발급주체) 질병관리청(COOV앱, COOV앱 연동 전자출입명부 플랫폼*)

* 전자출입명부 플랫폼: 네이버, 카카오, 토스, PASS앱(SKT, KT, LG)

○ (발급절차) COOV앱(또는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을 통해 본인인증 후 전자 증명서 발급

- 보건소에 방문하여 예방접종시스템에 ‘예방접종금기자’로 등록된 경우만 발급 가능

④ 인과성 근거 불충분(4-1) 판정자

1) 종이 증명서

☞ <서식 6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

○ (발급주체) 질병관리청

○ (발급절차 및 시기) ①보건소 방문 발급 또는 ②온라인을 통한 본인 직접 출력·발급

- (방문) 보건소는 코로나19 예방접종시스템에서 대상자 확인 후 발급

※ 예방접종시스템 예방접종등록 화면에서 ‘피접종자 예진결과’ 화면에서 증명서 출력 가능

질병청에서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으로 등록 → 예외확인서 발급 가능

The screenshot shows the 'COVID-19 Vaccination System' interface. At the top, there's a search bar with '주민등록번호' (Residential Registration Number) and a '검색' (Search) button. Below the search bar, a message states: '피접종자 검색결과 ① 주민등록번호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Search results for vaccinees ① Search is possible by residential registration number). A table shows search results with columns: '대상자 구분' (Vaccinee Category), '성명' (Name), and '주민등록번호' (Residential Registration Number). Below the table, there's a section for '피접종자정보' (Vaccinee Information) and '예방접종내역' (Vaccination History). The '피접종자정보' section includes fields for '피접종자구분' (Vaccinee Category), '성명' (Name), '주민등록번호' (Residential Registration Number), '생년월일' (Date of Birth), '우편번호' (Zip Code), '상세주소' (Detailed Address), '휴대전화번호' (Mobile Phone Number), and '문자수신동의' (Text Message Consent). The '예방접종내역' section includes '내국인' (Domestic Resident), '외국인' (Foreign Resident), '시술번호' (Procedure Number), and '관리번호' (Management Number). At the bottom, there's a section for '피접종자 예진결과' (Vaccinee Pre-examination Result). A red dashed box highlights a message: '예진 결과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사례로, 4-1 판정을 받아 방역패스 해외 인정 대상자입니다(본인 희망 시 접종 가능).' (Pre-examination result: As a case of adverse reaction after COVID-19 vaccine vaccination, it is assessed as 4-1, making you eligible for foreign recognition of the防疫패스 (If you wish, you can get vaccinated).)

- 코로나19 예방접종시스템에서 인과성 근거 불충분(4-1) 판정을 받은 대상자 조회 후 발급
- 인과성 근거 불충분(4-1) 판정자는‘ 접종금기·연기 대상자는 아니며, 본인 희망 시 접종 가능
- (온라인) 보건소 방문·등록 절차 없이,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 결과를 통보받은 대상자는 방역패스 통합 확인서 발급 누리집을 통해 본인인증 후 출력·발급 가능

2) 전자 증명서

<서식 7 : 접종증명·음성확인 예외확인서(전자증명서)>

○ (발급주체) 질병관리청(COOV앱, COOV앱 연동 전자출입명부 플랫폼*)

* 전자출입명부 플랫폼: 네이버, 카카오, 토스, PASS앱(SKT, KT, LG)

○ (발급절차) COOV앱(또는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을 통해 본인인증 후 전자 증명서 발급

⑤ 이상반응 입원치료자

1) 종이 증명서

 <서식 6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

○ (발급주체) 전국 보건소

○ (발급절차 및 시기) ① 보건소 방문 발급 또는 ② 온라인을 통한 본인 직접 출력·발급

- (방문) 대상자가 신분증과 진단서·입원확인서 지참 후 보건소를 방문한 경우, 담당자는 접종일 및 진단서 내용, 입원일 확인

* 입원확인서 외 입원사실 확인이 가능한 입퇴원확인서, 입원사실확인서 등 인정

- 진단서 상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경우, 입원확인서를 확인하여 예방접종 후 6주 이내 입원여부 확인 후 발급

▶ 이상반응 의심증상의 종류, 이상반응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진단서상 코로나 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이 있으면 인정

- (온라인) 보건소에 방문하여 등록한 사람의 경우 방역패스 통합 확인서 발급 누리집을 통해 본인인증 후 출력·발급 가능

2) 전자 증명서

 <서식 7 : 접종증명·음성확인 예외확인서(전자증명서)>

○ (발급주체) 질병관리청(COOV앱, COOV앱 연동 전자출입명부 플랫폼*)

* 전자출입명부 플랫폼: 네이버, 카카오, 토스, PASS앱(SKT, KT, LG)

○ (발급절차) COOV앱(또는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을 통해 본인인증 후 전자 증명서 발급

- 보건소에 방문하여 예방접종시스템에 '이상반응으로 입원치료 받은 자'로 등록한 경우만 발급 가능

3 예외 적용자 등록방법 (보건소용)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대상자별 발급 조건 및 증빙서류 확인

구분	발급 대상	증빙서류
① 중대한 이상반응자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접종 금기·연기 통보받은 경우	보건소 등록 불필요
② 기타 건강상 예외자	진단서·소견서 상 면역결핍자, 항암제·면역억제제 투여로 인해 백신접종 연기가 필요하다고 명시된 경우	진단서·소견서
③ 예방접종 금기자	진단서 상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어 '접종금기'가 필요하다고 명시된 경우	진단서
④ 인과성 불명확 판정자	피해보상 심의기준에 따른 인과성 불명확 (4-1) 판정자	보건소 등록 불필요
⑤ 이상반응 입원치료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입원치료(접종 후 6주 이내) 받은 경우	진단서, 입원 확인서*
⑥ 임상시험참여자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참여자	임상시험참여 증명서

* 입원확인서 외 입원사실 확인이 가능한 입퇴원확인서, 입원사실확인서 등도 인정

○ 예방접종시스템 로그인 후 ①예진결과등록내역 → ②신규등록 → ③ 등록대상자 정보 입력 → ④ 저장

The screenshot shows the '예진결과 등록내역' (Pre-examination Result Registration History) window. It includes a search bar and a list of records. A red arrow points to the '신규등록' (New Registration) button. A secondary window shows the '예진결과 등록내역' form with fields for '성명' (Name), '주민등록번호' (Residential Registration Number), '접종일자' (Vaccination Date), and '접종결과' (Vaccination Result). The '접종결과' field is set to '금기자 사유 없음' (No reason for non-vaccination). The '저장' (Save) button is highlighted.

4 기타 사항

□ 발급 비용 등

○ (증명서 발급) 온·오프라인 증명서 발급 비용은 무료

- 다만, 위탁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증명서, 진단서 및 소견서, PCR 음성확인서 등 발급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본인 부담

○ (PCR검사비) 무료*

* 민간의료기관에서 PCR검사시 검사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본인 부담

- 다만, 추후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등에 따라 유료 전환 예정

○ (신속항원검사비) 무료

- 단,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신속항원검사 시 진료비 5,000원

□ 증명서 등의 발급대장 작성·관리

○ 보건소 담당자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 등을 수기 발급 시 대장에 발급내역을 기록·관리

 <서식 9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 등의 발급대장>

- 발급대장은 엑셀 파일로 관리

○ 대상 확인서 : PCR 음성확인서, 격리해제확인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

Ⅲ

대상자별 증명서 확인방법

구 분		증명서 종류	확인내용
2차 접종 완료자/ 3차 접종(부스터) 완료자		① 전자증명서	-(본인확인) 성명, 생년월일 -(유효기간) 2차 접종 후 14일~6개월(180일)까지 * 3차 접종(부스터) 완료자는 유효기간 확인 불요
		② 종이증명서(예방접종증명서)	
		③ 예방접종 스티커	
코로나19 음성 확인자		신속항원검사 결과	-(본인확인) 성명, 생년월일 -(유효기간) 검사를 받은 시점부터 24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① 종이 증명서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PCR 검사 결과	-(본인확인) 성명, 생년월일 -(유효기간) 결과 통보받은 시점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① PCR 음성확인 문자 (2월말까지 한시 적용)	
		② 종이 증명서(PCR음성확인서)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완치자)		③ 전자 증명서	
		① 종이 증명서(격리해제확인서)	-(본인확인) 성명, 생년월일 -(유효기간) 격리해제일로부터 6개월(180일)까지
		② 전자 증명서	
확진자 중 접종완료자 (돌파감염자 포함)		① 종이 증명서(접종증명·음성확인 예외증명서)	-(본인확인) 성명, 생년월일 -(유효기간) 만료일 없음
		② 전자 증명서	
예 외 적 용	만 18세 이하 청소년	① 신분증	-(본인확인) 성명, 생년월일 -(연령) 나이(18세 초과 여부)
	임상시험참여자/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예방접 종금기자/4-1판 정자/이상반응 입원치료자	① 종이 증명서(접종증명·음성확인 예외증명서)	-(본인확인) 성명, 생년월일 -(유효기간) 만료일 없음
		② 전자 증명서	
	기타 건강상의 이유 해당자	① 종이 증명서(접종증명·음성확인 예외증명서)	-(본인확인) 성명, 생년월일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6개월(180일)
		② 전자 증명서	

□ 전산 및 통신 장애 등의 경우 전자 증명서 확인 방법

- QR 체크인이 안되는 경우 전자 증명서의 정보를 육안으로 확인
- 전자 증명서(COOV, 네이버, 카카오, 토스앱, PAS앱)의 접속 불가로 전자 증명서 육안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시설 관리·운영자가 구두로 이용자에게 접종증명·음성확인 관련 증명서 소지여부를 확인 또는 미소지자는 출입이 제한됨을 고지
 - * 위 내용을 고지한 경우에 시설 관리·운영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님

가. 접종 완료자 [2차(얀센 1차) 접종자 / 3차 접종(부스터)자]

① 전자 증명서(예방접종증명서, 예방접종확인서)

* COOV, 네이버, 카카오 등 상용 플랫폼

○ 주요 확인사항 : QR 스캔 또는 접종완료·추가접종 여부 육안 확인

- (QR 스캔) 이용자가 생성한 QR코드(COOV앱, 전자출입명부 플랫폼*) 스캔으로 유효한 접종증명 확인

* 전자출입명부 플랫폼: 네이버, 카카오, 토스, PASS앱(SKT, KT, LG)

- (육안확인) 전자 증명서에서 표출되는 접종증명 정보를 육안으로 점검하여 유효한 접종 증명서*임을 확인

* 전자 증명서내에서 “접종완료”, “3차접종”, 유효기간(2차 접종 후 180일) 만료 여부 등 주요 내용 확인 필요

※ 3차 접종(부스터) 증명서가 있는 경우 “14일 경과” 요건 확인 불필요

- 전자출입명부(QR체크인) 사용 시설은 전자출입명부와 연동되어, 유효한 접종상태인 경우, “접종완료자입니다”로 음성안내

<접종완료자 전자 증명서(COOV)>

국내 2차 접종완료	해외 2차 접종완료	3차 접종(부스터)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질병관리청 접종차수: 2차 접종완료: 14일 경과 백신제조사: 화이자 접종일자: 2021.10.14. (D+15)	 코로나19 예방접종확인서 질병관리청 접종차수: 2차 해외접종완료 백신제조사: 모더나 접종일자: 2021.04.21. (D+211)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 질병관리청 접종차수: 추가 접종 백신제조사: 모더나 접종일자: 2021.11.25.

② 종이 증명서(예방접종증명서, 예방접종확인서)

○ 주요 확인사항 : 2차(얀센 1차) 및 3차 접종(부스터)여부, 인적사항, 유효기간 등 확인

- 접종 완료여부 : 증명서상 2차 접종 완료 또는 3차 접종(부스터) 여부 확인
- 대상자 인적사항 : 증명서상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과 신분증 일치 여부
- 2차(얀센 1차) 접종 완료 14일 이후부터 180일까지

※ 유효기간 계산 예시

- '21.10.1. 10:00에 접종한 경우, '21.10.16. 0시부터 '22.3.30일까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 제3판」 준용

※ 추가접종자는 유효기간 확인 불필요(유효기간 없음)

③ 예방접종 스티커

○ 주요 확인사항 : 2차(얀센 1차) 및 3차 접종(부스터)여부, 인적사항, 유효기간 등 확인

- 대상자 인적사항 : 스티커 인적사항(성명)과 앞면의 신분증 일치 여부
- 접종 유효기간 : 2차(얀센 1차) 접종 완료 14일 이후부터 180일까지

※ 추가접종자는 유효기간 확인 불필요(유효기간 없음)

<예방접종 스티커 예시>

<2차 접종(얀센 1차)>		<3차 접종(부스터)>	
접종완료 21.06.04	제ABC00001호 홍길동  질병관리청	추가접종 21.12.20	제ABC00001호 홍길동  질병관리청

나. 코로나19 음성 확인자

나-①.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 확인자

① 종이 증명서

- 주요 확인사항 : 대상자 인적사항 및 확인서 유효기간 육안확인
 - 대상자 인적사항 : 증명서상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과 신분증 일치 여부
 - 증명서 유효기간 : 검사 시점부터 24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효력 인정

※ 유효기간 계산 예시

- '22.1.25. 10:00에 음성확인서(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 1.26일 24시까지 인정
- '22.1.25. 23:00에 음성확인서(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 1.26일 24시까지 인정

나-②. PCR 검사 결과 음성 확인자

① 문자 통지서

※ '문자 통지서' 방식은 '전자증명서' 도입으로 2월말까지만 한시 적용

- 주요 확인사항 : 대상자 인적사항 및 통지서 유효기간 육안확인
 - 대상자 인적사항 : 문자 통지서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과 신분증 일치 여부
 - 통지서 유효기간 : 문자 통지서의 "발신일시"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효력 인정

※ 보건소 발송 문자 통지서는 통지서 내용 중 PCR 음성확인 유효기간까지 효력 인정

※ 유효기간 계산 예시

- (보건소 통지) 문자 내용 확인 "②본 문자를 통한 PCR 음성확인 유효기간은 '21.11.16. 24:00까지입니다."
- (의료기관 통지) '21.11.12. 10:00가 발신일시인 경우, '21.11.14일 24시까지 인정

② 종이 증명서

- 주요 확인사항 : 대상자 인적사항 및 확인서 유효기간 육안확인
 - 대상자 인적사항 : 증명서상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과 신분증 일치 여부
 - 증명서 유효기간 : 검사결과 통보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효력 인정

※ 유효기간 계산 예시

- '21.11.12. 10:00가 결과 통보일인 경우, '21.11.14일 24시까지 인정

③ 전자 증명서

* COOV, 네이버, 카카오 등 상용 플랫폼

- 주요 확인사항 : PCR 음성결과 육안확인
 - 전자 증명서에서 표출되는 PCR 검사결과(음성)를 육안으로 점검

다.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완치자)

① 종이 증명서(격리해제확인서)

- 주요 확인사항 : 대상자 인적사항 및 확인서 유효기간 육안 확인
 - 대상자 인적사항 : 확인서상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과 신분증 일치 여부
 - 확인서 유효기간 : 격리해제일로부터 180일까지

※ 유효기간 계산 예시

- '21.6.1. 12:00 격리해제인 사람의 경우, '21.12.1일 0시까지 효력 인정
- '21.6.15. 12:00 격리해제인 사람의 경우, '21.12.14일 24시까지 효력 인정
- 격리해제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24시까지 효력인정일로 계산

② 전자 증명서(완치확인서)

* COOV, 네이버, 카카오 등 상용플랫폼

○ 주요 확인사항 : 전자 증명서에서 표출되는 정보를 육안으로 점검

* 전자증명서 양식 등 자세한 내용은 시스템 개선 후 추가 안내 예정

- 전자출입명부(QR체크인) 사용 시설은 전자출입명부와 연동

라. 코로나19 감염력이 있는 접종완료자(접종완료 완치자)

① 종이 증명서(접종증명·음성확인 예외 확인서_접종완료 완치자용)

○ 주요 확인사항 : 대상자 인적사항 및 확인서 유효기간 육안 확인

- 대상자 인적사항 : 확인서상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과 신분증 일치 여부

- 확인서 유효기간 : 만료일 없음

② 전자 증명서(예방접종증명서, 예방접종확인서 또는 완치확인서)

* COOV, 네이버, 카카오 등 상용 플랫폼

○ 주요 확인사항 : 전자 증명서에서 표출되는 정보를 육안으로 점검

* 전자증명서 양식 등 자세한 내용은 시스템 개선 후 추가 안내 예정

- 전자출입명부(QR체크인) 사용 시설은 전자출입명부와 연동되어,
유효한 접종상태인 경우, “접종완료자입니다”로 음성안내

마. 18세 이하 청소년

① 신분증

○ 적용시점 : '21.11.1부터

○ 주요 확인사항 : 대상자 인적사항 및 연령 기준 육안 확인

- 대상자 인적사항 : 신분증상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확인

- 연령 기준 : 18세 이하 청소년('04.01.01 이후 출생자)

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예외 적용자

① 종이 증명서(접종증명·음성확인 예외 확인서)

○ 주요 확인사항 : 대상자 인적사항 및 증명서 유효기간 육안확인

- 대상자 인적사항 : 증명서상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과 신분증 일치 여부
- 증명서 유효기간 : 증명서상 유효기간 확인

- ▶ (유효기간 만료일 없음) : 임상시험 참여자,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자, 예방접종 금기자, 인과성 불확실 판정자, 이상반응 입원치료자
- ▶ (발급일로부터 180일까지) : 기타 건강상의 이유자

② 전자 증명서(접종증명·음성확인 예외 확인서)

* COOV, 네이버, 카카오 등 상용 플랫폼

○ 주요 확인사항 : 접종예외자 정보 육안확인

- 전자 증명서에서 표출되는 접종예외자 정보를 육안으로 점검
 - * 본인인증 후 발급한 전자증명서는 신분증 대조확인 절차 불필요
- 전자출입명부(QR체크인) 사용 시설은 전자출입명부와 연동

IV

관리방안

가. 지도 점검 및 단속

※ 각 시설별 담당자가 지도·점검 및 단속 실시

- (지도·점검) 시도 및 시군구청 담당자는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코로나19 접촉증명 의무화 시설·장소에 대해 지도·점검
- (단속) 위반행위 적발 시, 시설 책임자 및 이용자에게 접촉증명 제시 및 증명서를 확인할 것을 지도하고, 불이행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의 절차에 따라 과태료 부과
- 증명서를 위·변조하여 제시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형법상 공(사)문서 위·변조의 죄 및 공무방해의 죄를 적용하여 고발 조치

나. 증명서 미확인에 대한 조치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제2호의2에 따른 방역지침 준수명령 위반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12호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 (생략)

-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 (단속 대상) 증명서를 확인한지 않은 시설 책임자 및 증명서 없이 무단으로 시설을 이용한 자
- (단속권자)
 - 과태료부과권자 :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행정명령권자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조치사항) 방역지침 준수명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동법 제49조 제2항 및 제83조) 또는 운영중단 명령(동법 제49조제3항)

감염병예방법 제83조(과태료 규정)

-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위반행위 적발 → 단속자 신분증 제시, 단속근거 설명 → 위반자 인적사항 확인(요청)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10일 이상의 의견제출 안내) → 과태료 부과통지 → 이의제기 안내(60일 이내)

다. 증명서 위·변조에 대한 조치

- 단속 과정에서 위·변조한 전자 증명서, 종이 증명서 및 PCR 음성 문자 등을 제시한 이용자는 인적사항 확인하여 고발 조치

* “위·변조의 죄 → 행사의 죄 → 공무(업무)방해의 죄” 순으로 적용·처벌

구분	적용 가능 조문	사례 예시
위·변조의 죄	제225조 공문서 위·변조 → 10년 이하의 징역	○ 발급 권한이 없는 공무원이 발급하거나, 공무원 아닌 자가 증명서를 작성한 경우 → 위조 ○ 정상적으로 발급된 증명서의 내용을 고친 경우 → 변조
	제227조 허위공문서 작성등 → 10년 이하의 징역	○ 발급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스스로 행사할 목적으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
	제229조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 10년 이하의 징역	○ 위·변조되거나 허위 등으로 작성된 증명서를 사용하는 경우
	제231조 사문서 위·변조 → 5년 이하의 징역	○ 타인의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제234조 위조사문서 등의 행사 → 5년 이하의 징역	○ 위·변조된 사문서를 사용하는 경우
공무방해의 죄	제314조(업무방해) → 5년 이하의 징역 →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수칙 등의 적용 등과 관련 민간 사업장에 위·변조된 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 수칙위반에 의한 영업정지나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폐쇄, 소독 등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대한 업무방해의 죄가 성립 가능

- 위의 죄를 저지르게 한 자는 공범이나 교사범 법리 적용 가능
- 금전이 오고간 경우에는 뇌물죄 등 별도의 조문 추가 적용 가능

라. 접종증명·음성확인 관련 증명서별 진위 확인 방법

□ 증명서 별 위변조 점검 방법

구 분		증명서 종류	증명서 확인내용	위변조 점검 방법
접종완료자		① 전자 증명서	-(본인확인) 성명, 생년월일 -(유효기간) 접종완료일 14일 이후부터 180일까지	-
		② 종이 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① 본인확인 후
		③ 예방접종 스티커		② 예방접종도우미/정부24 누리집 접속하여 진위확인 * 진위 확인 메뉴 有(붙임 1
코로나19 음성 확인자		신속항원검사 결과	-(본인확인) 성명, 생년월일 -(유효기간) 검사를 받은 시점부터 24시간 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① 본인 확인 후 ② 증명서 발급기관에 유선 확인
		① 종이 증명서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PCR 검사 결과	-(본인확인) 성명, 생년월일 -(유효기간) 결과 통보받은 시점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① 본인 확인 후
		① PCR 음성확인문자 ('22.2월말까지 한시 적용)		② 검사기관에 유선 확인 * 음성확인문자 발신번호로 연락
		② 종이 증명서 (PCR음성확인서)		① 본인 확인 후 ② 증명서 발급기관에 유선 확인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 (완치자)		② 전자 증명서		-
		① 종이 증명서 (격리해제확인서)	-(본인확인) 성명, 생년월일 -(유효기간) 격리해제일로부터 180일까지	① 본인 확인 후 ② 증명서 발급 보건소에 유선확인
		② 전자 증명서		-
예 외 적 용	만 18세 이하 청소년	① 신분증	-(본인확인) 성명, 생년월일 -(연령) 성명, 나이	본인 여부 및 연령 확인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예외자	① 종이 증명서 (접종증명·음성확인 예외증명서)	-(본인확인) 성명, 생년월일	① 본인 확인 후 ② 증명서 발급 보건소에 유선확인
		② 전자 증명서(coov) (붙임 2)		-

* 보건소 등에 유선확인 시 가급적 업무시간 내 연락 (예 : 야간점검시 익일에 확인)

□ 예방접종 종이증명서(스티커) 진위 확인 방법

- 관련 누리집을 통해 예방접종증명서(또는 확인서)의 문서번호·성명 등 진위여부 확인

증명서 발급경로		진위 확인 방법
오프라인 발급 (접종기관, 보건소, 주민센터 등) * 예방접종스티커 포함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 예방접종증명서 진위 확인 (https://cert.kdca.go.kr)
온라인 발급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http://kdca.go.kr)	정부24 > 인터넷 발급문서 진위 확인 (https://www.gov.kr/mw/EgovPageLink.do?link=confirm/AA040_confirm_id)
	정부 24	

< 참고 1 : 누리집별 진위 확인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정부 24 (증명서 진위 확인)
증명서 진위 확인	스티커 진위 확인	
예방접종증명서 진위확인(의료기관/보건소/주민센터) 오프라인 문서 진위확인 서비스 스티커 진위확인 서비스 ※ 오프라인 문서 진위여부 확인하기 오프라인(의료기관/보건소/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예방접종 증명서를 수령한 개인이 문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진위확인을 하고자 하는 예방접종 증명서의 문서번호를 아래에 입력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을 통해 발급 받은 예방접종증명서는 [예방접종증명서 진위확인(온라인)] 메뉴에서 진위확인 가능합니다. 정부24를 통해 발급받은 예방접종증명서는 [정부24]에서 진위확인 가능합니다. ※ 문서번호를 입력하세요 * 예방접종증명서 문서번호: * 예방접종증명서 대상자 성명: 확인 취소	예방접종증명서 진위확인(의료기관/보건소/주민센터) 오프라인 문서 진위확인 서비스 스티커 진위확인 서비스 ※ 스티커 진위여부 확인하기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예방접종 스티커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진위확인을 하고자 하는 예방접종 스티커의 발급번호를 아래에 입력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을 통해 발급 받은 예방접종증명서는 [예방접종증명서 진위확인(온라인)] 메뉴에서 진위확인 가능합니다. 정부24를 통해 발급받은 예방접종증명서는 [정부24]에서 진위확인 가능합니다. ※ 스티커번호를 입력하세요 * 예방접종 스티커 번호: * 예방접종 대상자 성명: 확인 취소	인터넷 발급문서 진위확인 문서 진위확인 서비스 증명서 코드 진위확인 QR코드 진위확인 문서진위확인 서비스 *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인정증명서를 수령한 개인이 문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자주와 같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발급문서는 접수일자 후 60일까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 QR코드 진위확인 서비스는 4대역기 등을 통해 발급받은 문서는 발급사(기관)를 자동으로 인식하여 조회 가능합니다. - 국제형 인정증명서는 국제형 인정증명서 발급번호로 조회하기(성명)를 클릭하세요. 정부24발급문서 및 타기관 발급문서 ※ 문서번호를 입력하세요 * 발급 4대역: * 문서(확인)번호: 확인 취소

< 참고 2 : 증명서·스티커의 문서·스티커번호 확인 >

예방접종증명서	예방접종스티커
제 1. 호 예 방 접 종 증 명 서 Certificate of Immunization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접종번호: 접종일: 접종기관:	접종완료 21.06.04 홍길동  질병관리청 제ABC00001호

① 지자체 담당자용

□ 각종 증명서·확인서 발급

- 민원인 신청시 '예방접종증명서', 'PCR 음성 확인서', '코로나19 감염 후 격리해제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 등 시설 이용을 위한 각종 증명·확인서 발급
 -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방역패스 예외자의 경우, 전자증명서 및 온라인 발급을 위해 예외자로 전산등록
 - 증명서별 발급 기준 충족여부 또는 증빙자료 확인, 신분증 등을 통한 본인 확인 후 적정 대상에게 발급
 - 유효기간 확인이 용이하지 않은 종이 증명서는 발급 최소화하고 가급적 전자 증명서로 발급 권고
 - 특히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확인서는 전자 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자 증명서로 발급토록 권고
- * 14세 미만의 아동, 스마트 폰이 없는 경우 등
- ※ 예외 적용자 중 ③-1(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자)와 ③-4(인과성 근거 불충분(4-1) 판정자)는 질병관리청에서 대상자 확인·등록하므로 지자체 별도 조치사항 없음

□ 시설, 이용자 대상 안내·홍보

- (시설 안내) 관할구역 내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설을 대상으로 시설별 사전준비 및 준수사항 전달(안내서 등 공문발송)
- (주민 홍보) 지역 주민 대상으로 해당 시설 이용시 준비, 주의 필요사항에 대해 지역 내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적극 홍보 안내

□ 지침 준수 여부 지도·감독

- (계획 수립) 시도 및 시군구청 담당자는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코로나19 접촉증명 의무화 시설·장소에 대해 지도·점검
- (지도·점검) 위반행위 적발 시, 시설 책임자 및 이용자에게 접촉증명 제시 및 증명서를 확인할 것을 지도하고, 불이행시 질서 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에 따라 과태료 부과
 - 증명서를 위·변조하여 제시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형법상 공문서 위·변조의 죄 및 공무방해의 죄를 적용하여 고발 조치
- (실적 보고) 각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지도·점검 실적을 정기적으로(주 1회) 중대본에 보고

2 사업장용

Q1. 접종증명·음성확인이 의무화된 사업장(시설)은 어디인가요?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시설은 식당·카페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 및 50~299인 행사입니다. ※ 상점,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제외
- *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장 포함(결혼식은 미접종자 49명+접종완료자 201명 선택 가능)
- 단,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은 입원환자·입소자를 면회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외래 진료환자, 간병인력·직원은 미적용

<적용시설별 이용가능 대상>

구 분	접종완료자 (완치자 포함)	미접종자 중 예외 인정범위		
		코로나19 음성	의학적사유	18세 이하 ¹⁾
유흥시설	○	×	×	×
경마·경륜·경정/카지노	○	○	×	×
실내체육시설	○	○	○	○
노래연습장	○	○	○	○
목욕장	○	○	○	○
입원자·입소자 면회	○	○	×	×
노인·장애인 이용시설	○	○	△ ²⁾	△ ²⁾
식당·카페	○	○	○	○
멀티방(오락실 제외)	○	○	○	○
PC방	○	○	○	○
(실내)스포츠 경기(관람)장	○	○	○	○
파티룸	○	○	○	○
안마소·마사지업소 ⁴⁾	○	○	○	○
대규모 행사 (50인 이상 300인 미만)	○	○	○	△ ³⁾
학원(관악기, 노래, 연기) 등 ⁵⁾	○	○	○	○

1) 2009.12.31.이전 출생자는 '22.3.1.부터 예외 적용에서 제외

2) 당사자 본인 이용 시 예외적인 경우 허용 가능(예: 12세 미만 등)

3)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학교 행사 등은 12~18세의 방역패스 예외 인정

4)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5) 서울행정법원의 방역패스 적용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결정에 따라 본안소송 판결 전까지 학원(관악기, 노래, 연기)은 방역패스 효력 정지

※ 소관부처·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강화된 방역수칙 적용 가능

Q2. 개인 사업장에서 접종증명·음성확인 어떻게 확인하나요?

○ 사업장은 ①QR코드 스캔 또는 ②증명서로 확인가능합니다.

① (QR코드 확인) 전자증명서의 QR코드를 확인하는 경우, 사전에 ①네트워크 연결이 가능한 단말기*, ②시설관리자용 앱 설치가 필요합니다.

* 태블릿 PC 또는 휴대폰(대규모 인원이 입장하는 시설은 스캐너가 내장된 PDA형태(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단말기 사용 가능)

** QR코드 확인 준비사항은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준비사항과 동일함

- 이용자가 생성한 QR코드를 스캔하거나, 표출되는 접종 증명 정보를 육안 확인 후 시설 이용 가능합니다.

* QR코드 스캔이 불가능한 경우, 전자증명서 및 본인확인 후 시설 이용 가능

② (종이 증명서 본인확인) 시설 출입 시 유효기간 내 증명서(종이 또는 문자) 및 본인확인(신분증) 후 시설 이용 가능합니다.

③ (유효기간의 확인)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 '방역패스 유효기간 안내'에서 당일까지 유효한 접종력 확인 가능

<참고 : 증명서별 유효기간>

증명서(대상자) 종류		유효기간
예방접종증명서, 예방접종 스티커 (접종완료자)		2차 접종일로부터 14일~180일 ¹⁾ , 또는 3차 접종(부스터) ²⁾ 후 즉시
코로나19 음성확인	PCR 음성확인서, 음성확인문자	음성 결과 통보받은 시점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검사를 받은 시점부터 24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격리해제 확인서 (확진후 격리해제자(완치자))		격리해제일로부터 180일 이내
예방접종 예외 확인서 (접종 예외자)		별도 기한 없음 (기타 건강상의 이유 해당자는 발급일로부터 180일)

* 접종증명서·스티커의 유효기간은 '22.1.3일(월)부터 적용됨

1) 코로나19 감염력이 있는 접종완료자(접종완료 완치자)는 유효기간 없음

2) 3차 접종(부스터) 완료자는 유효기간 없음

사업장용 가이드 요약

< 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따른 시설별 이용가능 대상 >

구 분	접종완료자 (완치자 포함)	미접종자 중 예외 인정범위		
		코로나19 음성	의학적사유	18세 이하
유흥시설	○	×	×	×
경마·경륜·경정/카지노	○	○	×	×
의료기관·요양시설 면회	○	○	×	×
노인·장애인 시설이용	○	○	△*	△*
실내다중이용시설	○	○	○	○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안마소, 파티룸,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50~299인 행사	○	○	○	○

* 당사자 본인 이용 시 예외적인 경우 허용 가능(예: 12세 미만 등)

□ 준비사항 및 확인방법

1) QR코드 확인

- (준비사항) 네트워크 연결이 가능한 단말기(휴대폰 또는 태블릿 PC), 대표자(시설책임자) 명의의 휴대폰, 시설관리자용 앱 설치

* QR코드 확인 준비사항은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준비사항과 동일함

- (확인절차) 시설 출입 시, 개인별 생성된 QR코드 스캔

- (증명서) 전자증명서(COOV앱, 전자출입명부 플랫폼*)

* 네이버, 카카오톡, 토스, 통신 3사 PASS앱(SKT, KT, LG)

2) 종이 증명서 본인 확인

- (준비사항) 별도 준비사항 없음

- (확인절차) 증명서(종이 또는 문자) 및 본인확인(신분증) 후 이용

- (증명서) 종이증명서, 문자메시지(PCR 음성확인문자)

3) 증명서의 유효기간 확인

증명서(대상자) 종류		유효기간
예방접종증명서, 예방접종 스티커 (접종완료자)		접종완료일로부터 14일 이후부터
코로나19 음성확인	PCR 음성확인서, 음성확인문자	음성 결과 통보받은 시점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자체 소견서	검사를 받은 시점부터 24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격리해제 확인서 (완치자)		격리해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예방접종 예외 확인서 (접종 예외자)		별도 기한 없음 * 기타 건강상 접종연기자는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180일

2022.1.26.

우리시설은
방역패스 적용시설입니다!

방역패스 적용시설

질병관리청

↓ 입장가능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01 접종완료자
전자 예방접종증명서(COOV앱 등), 종이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예방접종스티커



02 코로나19 음성확인자
PCR 음성확인서(종이 또는 COOV앱), PCR 음성확인문자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종이) 또는 소견서

✓ 1.26일부터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도
전국 어디에서나 사용 가능합니다!



03 코로나19 완치자
코로나19 격리해제 확인서



04 접종증명·음성확인 예외자
18세 이하 청소년,
건강상 접종 불가자: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확인서
(종이 또는 COOV앱)



**입장 전 전자출입명부 또는 콜체크인과 함께
접종증명서 등 방역패스를 보여주세요!**

[사업장 게시용 포스터(1.25일 기준)(가로)]

2022.1.26.

방역패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시설

우리시설은

방역패스

적용시설

입니다!

우리 시설에 입장 가능 대상자는,

01

접종완료자

전자 예방접종증명서 (COOV앱 등), 종이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예방접종스티커

02

PCR 음성확인자

PCR 음성확인서(종이 또는 COOV앱)

PCR 음성확인문자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종이) 또는 소견서

1.26일부터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도 전국 어디에서나 사용 가능합니다!

03

코로나19 완치자

코로나19 격리해제 확인서

04

접종증명·음성확인 예외자

18세 이하 청소년, 건강상 접종 불가자: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확인서(종이 또는 COOV앱)

입장 전 전자출입명부 또는 콜체크인과 함께

접종증명서

등

방역패스

를 보여주세요!

3 시설 이용자용(대국민용)

Q1. 일반 식당, 카페를 이용할 때에도 접종증명서, 음성확인서가 필요한가요?

- 네, '21.12.6일(월)부터 식당, 카페 이용시에도 접종증명서 또는 음성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 다만, 미접종자 1인이 단독이용하는 경우, 접종증명서 또는 음성확인서 없이 식당, 카페 이용 가능합니다.('21.12.18.(토)~'22.2.6.(일))
- * 방역패스 미소지자 1인의 식당·카페 단독이용은 가능하나, 접종완료자 등 (방역패스 소지자)와 동반이용은 불가('21.12.18.(토)~'22.2.6.(일))

Q2.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도 유흥시설 이용이 가능한가요?

- 유흥시설의 경우 접종완료자(완치자 포함), 접종완료 완치자에 한해 이용 가능합니다.
- 접종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 ① COOV(코로나19 전자예방접종증명서)앱, 전자출입명부(네이버, 카카오 등)
 - ② 접종기관, 보건소에서 발급한 종이 증명서(예방접종증명서)
 - ③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한 예방접종스티커 등 세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④ 완치자는 격리해제 증명서, 접종완료 완치자는 종이증명서(접종증명·음성확인예외 확인서(접종완료 완치자용))로 가능합니다.

Q3.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한번 발급받으면 계속 사용 가능한가요?

- PCR 음성확인서는 ①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에서 발송한 PCR 음성확인 문자, ②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종이 음성확인증명서, ③ COOV 앱 등 세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며,

- PCR 음성 확인 문자의 효력은 통지된 내용에 포함된 “유효기간” 까지이며, 유효기간이 표시되지 않은 문자의 경우에는 “발신일시”로부터 48시간이 경과한 날의 자정(24시)까지 인정됩니다.
- * 예) 11.1일 오전 10시에 문자를 수신한 경우 11.3일 자정까지 유효
- 보건소에서 발급받은 음성확인 종이증명서의 경우 서류에 기재된 음성 결과등록(보고)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24시)까지 효력이 인정됩니다.
- 다만, PCR 음성확인 문자통지서는 전자증명서 도입으로 2월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인정됩니다.
-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①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발급한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②호흡기 전담 클리닉에서 발급한 자체 소견서로 가능하며, 문자 또는 전자증명서 사용은 불가합니다.
-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는 서류에 기재된 검사일시로부터 24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24시)까지 효력이 인정됩니다.(검사당일과 그 다음날까지 인정)

Q4. 외래진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증명서류가 필요한가요?

- 의료기관,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의 경우 입원환자나 입소자를 면회하기 위해 방문하는 자에 한해 증명서류가 필요하며,
- 외래 진료를 위해 방문하는 경우에는 현재와 동일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Q5. 초등학생 자녀와 탁구장을 방문하고자 할 경우 자녀의 시설 이용을 위해 증명서가 필요한가요?

- 만 18세 이하 청소년은 별도 접종증명서·음성확인서 없이도 실내체육

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시설 이용이 가능합니다.

- 연령 확인을 위해 생년월일이 명시된 신분증(학생증, 청소년증 등)이 필요하나, 영유아나 아동은 육안으로 확인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 '22.3.1.(화)부터 2009.12.31.이전 출생한 청소년도 방역패스가 적용되며, 실내체육시설 이용을 위해 접종증명서·음성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단, 11세 이하('10.1.1이후 출생자) 청소년은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로 접종증명서·음성확인서 없이 방역패스 적용시설 이용 가능합니다.

이용자용 가이드 요약

< 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따른 시설별 이용가능 대상 >

구 분	접종완료자 (완치자 포함)	미접종자 중 예외 인정범위		
		코로나19 음성	의학적사유	18세 이하
유흥시설	○	×	×	×
경마·경륜·경정/카지노	○	○	×	×
의료기관·요양시설 면회	○	○	×	×
노인·장애인 시설이용	○	○	△*	△*
실내다중이용시설	○	○	○	○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안마소, 파티룸,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50~299인 행사	○	○	○	○

* 당사자 본인 이용 시 예외적인 경우 허용 가능(예: 12세 미만 등)

□ 시설 이용 전 준비사항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대상 시설 이용 전 증명서 발급

< 증명서 발급방법 및 유효기간 >

구 분		유효기간	증명서 양식	발급방법
접종완료자		2차접종 후 14~180일, 3차접종 후 즉시	전자증명서	COOV앱, 전자출입명부
			종이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접종기관 또는 전국 보건소
			예방접종 스티커	행정복지센터
코로나19 음성 확인	PCR 검사	결과 통보받은 시점 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	PCR 음성확인문자	보건소 또는 검사 의료기관
			종이증명서 (음성확인서)	보건소 또는 검사 의료기관, 누리집
			전자증명서	COOV앱, 전자출입명부
	RAT(신속 항원검사)	검 사 시 점 으 로 부 터 24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 또는 소견서	보건소 또는 검사 의료기관 (검사 후 즉시 발급)
코로나19 감염 후 격리해제자(완치자)		격리해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종이증명서 (격리해제확인서)	격리 관할 보건소, 누리집
			전자증명서	COOV앱, 전자출입명부
예 외 적 용	만 18세 이하 청소년	-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
	의학적 사유에 의한 예외자	-	전자증명서	COOV앱, 전자출입명부
	기타 건강상 이유	발급일로부터 180일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자 증명서	전국 보건소

□ 시설 출입 시 증명서 제시방법

○ 전자증명서 : COOV앱 또는 전자출입명부(COOV앱 연동)

- 시설 출입 시 QR코드 생성(이용자)·스캔 후 입장

○ 종이 증명서(또는 문자 메시지)

- 시설책임자에게 증명서 제시 및 본인 확인(신분증)

4 의료기관용

Q1. 의료기관의 방문자(외래진료·방문·입원·종사)는 모두 접종증명·음성 확인제가 적용되나요?

- 아니오, 의료기관의 입원환자를 면회하는 경우에만 접종증명·음성 확인제가 적용됩니다.(외래진료·단순방문(택배, 건물 내 다른 시설 이용), 입원, 종사 미적용)
- 의료기관의 미접종 직원 및 간병인력, 신규 입원환자는 소관 부처의 방역수칙에 따라 PCR 검사 등이 요구됩니다.

Q2. 환자가 건강상 이유로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예외자' 진단서를 요구하는 경우, 진단서 발급은 의료기관의 재량인가요?

-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 예외자'로 인정되는 경우는 ①코로나19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예방접종 금기·연기자, ②면역결핍자 또는 항암제·면역억제제 투여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연기가 필요한 자, ③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에 따른 접종금기자(코로나19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④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인과성 근거 불충분(4-1) 판정자, ⑤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입원치료한(접종일로부터 6주 이내) 자입니다.
- ①코로나19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지자체의 접종 금기·연기 통보를 받은 경우, 예방접종시스템과 자동연계되어 보건소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②면역결핍자 또는 항암제·면역억제제 투여로 예방접종 연기가 필요한 경우, ¹⁾면역결핍자 또는 항암제·면역억제제 투여자이며,

²⁾해당 질환으로 예방접종 연기가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이 모두 명시된 진단서·소견서를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③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에 따라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어 예방접종이 금기된 경우, ¹⁾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 발생이력이 있고, ²⁾접종금기가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이 모두 명시된 진단서를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화이자, 모더나) polyethylene glycol(PEG) 또는 관련 성분(molecules)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접종 금기대상에 포함, 트리스(히드록시메틸) 아미노메탄 성분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모더나 접종 금기대상에 포함
- ▶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polysorbate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접종 금기대상에 포함

- ④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인과성 근거 불충분 (4-1) 판정자의 경우 예방접종시스템과 자동연계되어 보건소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입원치료한 경우 ¹⁾진단서 및 ²⁾입원치료(접종 후 6주 이내)한 기록이 있어야 하므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입원치료 하였다는 내용이 명시된 진단서와 입원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는 상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를 발급하므로,

※ (참고) ①코로나19 1차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지자체의 2차접종 금기·연기 통보를 받은 경우, ④ 인과성 불명확 판정자는 보건소 방문 없이 COOV앱으로 전자 예외확인서 발급 가능

- 면역글로불린 투여, 고열 등 일시적인 사유 및 계란 알레르기, 아토피 등의 진단서·소견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1) 개요

Q1. 11월부터 적용되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란 무엇인가요?

- 감염 전파 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과 고령층 등 고위험군의 보호가 필요한 시설(요양병원·시설,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안전한 시설 이용 및 미접종자 보호를 위해 접종 완료자 및 일부예외자만 시설의 이용을 허용하는 이른바 ‘방역 패스’의 개념입니다.

Q2. 어떤 다중이용시설에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나요?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시설은 식당·카페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 및 50~299인 행사*입니다. ※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제외
- *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장 포함(결혼식은 미접종자 49명+접종완료자 201명 선택 가능)
- 또한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은 입원환자·입소자를 면회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외래 진료환자, 간병인력·직원은 미적용

Q3.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 접종완료자와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자,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완치자), 18세 이하인 사람, 불가피한 의학적 사유로 접종이 불가능한 사람 등이 시설 이용대상자이며, 시설별로 이용가능한 대상자 범위가 상이합니다.

<적용시설별 이용가능 대상>

구 분	접종완료자 (완치자 포함)	미접종자 중 예외 인정범위		
		코로나19 음성	의학적사유	18세 이하 ¹⁾
유흥시설	○	×	×	×
경마·경륜·경정/카지노	○	○	×	×
실내체육시설	○	○	○	○
노래연습장	○	○	○	○
목욕장	○	○	○	○
입원자·입소자 면회	○	○	×	×
노인·장애인 이용시설	○	○	△ ²⁾	△ ²⁾
식당·카페	○	○	○	○
멀티방(오락실 제외)	○	○	○	○
PC방	○	○	○	○
(실내)스포츠 경기(관람)장	○	○	○	○
파티룸	○	○	○	○
안마소·마사지업소 ⁴⁾	○	○	○	○
대규모 행사 (50인 이상 300인 미만)	○	○	○	△ ³⁾
학원(관악기, 노래, 연기 등 ⁵⁾	○	○	○	○

1) 2009.12.31.이전 출생자는 '22.3.1.부터 예외 적용에서 제외

2) 당사자 본인 이용 시 예외적인 경우 허용 가능(예: 12세 미만 등)

3)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학교 행사 등은 12~18세의 방역패스 예외 인정

4)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5) 서울행정법원의 방역패스 적용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결정에 따라 본안소송 판결 전까지 학원(관악기, 노래, 연기)은 방역패스 효력 정지

※ 소관부처·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강화된 방역수칙 적용 가능

Q4. 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 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2021.11.1. 1차 개편부터 일부 시설에 대해 적용되며, 대상시설의 감염전파 등 위험도를 평가하여 2차 개편 이후 계속 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2] 발급대상 및 방법

< 2-1. 접종완료자 >

Q1.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 즉시 예방접종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요?

- 예방접종증명서는 접종 완료 후 접종기관(예방접종센터, 위탁의료기관)·보건소 또는 정부24 및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에서 언제든지 발급 가능합니다.
- 다만,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시설 이용을 위해서는 2차접종일(얀센접종자는 1차)로부터 14일~6개월(180일) 또는 3차(부스터)접종을 해야 합니다.

Q2. 접종 후 쿠브(COOV)에서 발급받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나요?

- 네, COOV앱(COOV앱과 연동된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 본인인증 및 접종정보 업데이트 후 사용 가능하며,
* 전자출입명부 플랫폼: 네이버, 카카오, 토스, PASS앱(SKT, KT, LG)
- 방역패스 적용시설 이용 시, COOV앱에서 QR코드 생성·스캔 후 입장할 수 있습니다.

Q3. 2차접종 후 14일이 경과했음에도 쿠브(COOV)에서 '14일 경과'가 표시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하면 표시가 되나요?

- 접종완료 후 14일이 경과한 날의 자정(24시)부터 '14일 경과'가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 (예시) '21.11.1. 10:00에 접종완료한 경우, '21.11.15일 24시부터 '14일 경과' 표시
- 표시되지 않는 경우, 앱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하거나 앱상단의 '나의 코로나19 예방접종 내역 발급받기'를 통해 증명서를 갱신하면 됩니다.

Q4. 1차 접종만 완료한 경우에는 접종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요?

- 1차 접종 후에도 접종증명서 발급 가능합니다.
- 단,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경우, 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은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된 날부터 180일까지 인정됩니다.

Q5. 2차접종 후 3차 접종(부스터) 대상자인 경우, 3차 접종(부스터)을 맞아야만 접종완료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방역패스가 인정되는 접종완료자는 2차접종(얀센접종자는 1차접종) 후 14일~6개월(180일), 또는 3차 접종(부스터)을 한 경우입니다.
- 2차접종 후 18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3차(부스터) 접종을 하지 않았더라도 접종완료자로 인정되나,
- 2차접종 후 180일이 지난 경우, 3차(부스터) 접종을 받아야 접종 완료자로 인정됩니다.
- 다만, 돌파감염 등 코로나19 감염이력 있는 2차접종 완료자(얀센접종자는 1차접종)는 3차(부스터) 접종이 권고되지 않으며, 2차접종 후 180일이 지나더라도 접종완료자로 인정됩니다.

Q6 접종증명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접종증명은 2차접종(얀센접종자는 1차접종) 후 14일~6개월(180일), 또는 3차 접종(부스터) 후 즉시 효력이 인정됩니다.
- (전자증명서(COOV앱 등)) 2차접종 14일 후 “14일 경과” 표시가 조회되며, 180일 경과 시, “유효기간 만료” 표시가 조회됩니다.
- 돌파감염 등 코로나19 감염력이 있는 2차 접종 완료자는 접종증명의 유효기간이 없으며, 2차 접종 후 180일이 지나더라도 “유효기간 만료” 표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 (종이증명서, 스티커) 별도 유효기한 표시는 없으며, 육안으로 유효기간 확인 가능합니다.
- 국민비서 알림으로 유효기간 만료 전(D-14, 7, 1)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하며, 질병청 누리집(<https://ncv.kdca.go.kr>)에서 효력이 인정되는 2차 접종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7 예방접종 완료 후 코로나19 확진(돌파감염)되었습니다. 2차접종 후 180일 이내에 3차 접종(부스터)을 받아야 접종완료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아니오, 돌파감염(2차접종 완료 후 코로나19 확진된 경우) 등 코로나19 감염력이 있는 2차접종 완료자는 2차접종 후 14일이 경과하면, 별도 유효기간 없이 접종증명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 코로나19 감염력이 있는 2차접종 완료자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증명서 발급 및 확인 가능합니다.
 - (전자증명서) 유효기간 없는 전자 예방접종증명서가 발급되며, 2차접종 후 180일이 지나더라도 유효합니다.
 - (종이증명서) 신분증 지참 후 보건소에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확인서(접종완료 완치자용) 발급 가능합니다.
- * 아직 2차접종 또는 격리해제일로부터 18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기존의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격리해제 확인서 사용 가능함

Q8 이미 2차접종으로부터 180일이 지난 경우, 3차(부스터)접종을 받지 않았다면 당장 접종완료자로 인정받지 못하나요?

- 접종증명의 유효기간 설정은 '22.1.3일(월)부터 시행됩니다.
 - * 계도기간 1주(1.3일~1.9일)
- 이에, 이미 2차접종으로부터 180일이 지난 경우, 2차접종 증명의 유효기간은 '22.1.3일(월)에 일괄 만료됩니다.
 - * 7.6일(화) 이전에 2차접종(얀센은 1차접종) 한 경우, '22.1.3일에 일괄만료

Q9 해외접종완료자도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나요?

- 해외예방접종 완료자의 경우 증명서류를 지참하고 보건소에 예방접종력을 등록하신 경우 '예방접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종이 증명서와 전자 증명서 둘 다 발급 가능합니다.
- 예방접종확인서(종이, COOV 앱) 소지자는 국내 예방접종완료자와 동일하게 방역패스로 인정됩니다.

Q10. 주한미군에서 접종한 경우 접종증명서를 어떻게 발급받나요?

-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적용을 받는 주한미군의 구성원, 군속 및 그 가족들 중 외국국적자는 보건소에 내방하지 않고, 주한미군 측의 책임하에 주한미군이 예방접종력을 확인 후 종이 예방접종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입니다.
- 이 경우, 신청인이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의 적용을 받는 자인지 여부, 예방접종력 확인 방식 및 필요서류, 발급 절차 등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주한미군 측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적용을 받는 주한미군의 구성원, 군속 및 그 가족들 중 한국국적자 또는 그 외 주한미군에서 제공한 백신을 접종한 한국국적자의 경우 기존에 안내한 바와 같이 주한미군 측이 발행한 백신접종카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보건소에서 접종 이력을 등록하고 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한미군 내 접종을 증명하기 위한 주한미군 측 관인 또는 라벨이 필요

Q11. 외국인 승무원 중 해외접종자 등 격리면제자의 경우,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적용 예외로 호텔 실내체육시설 이용이 가능한가요?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는 아주 특수한 경우에 한해 인정됩니다.
- 국외접종완료자로 격리면제된 경우에도, 보건소에서 접종력 등록 및 예방접종확인서 발급 후 실내체육시설을 이용 가능합니다.

< 2-2. PCR 음성확인자 >

**Q1. 검사 방법 중에는 PCR 검사만 인정되나요?
신속항원검사나 자가검사키트 같은 검사는 인정되지 않나요?**

- 당초 방역패스로 인정되는 코로나19 음성확인서는 PCR 음성확인서로 한정되었으나,
- 오미크론 점유율이 높은 4개 지역(전남·광주·평택·안성)에서 신속항원검사가 시범적용('22.1.26.~)됨에 따라,
 - 1.26일(수)부터 해당 지역에서 발급받은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도 전국 어디에서나 방역패스로 인정됩니다.

**Q2. 코로나19 음성 검사결과는 어떤 방식으로 증명하면 되나요?
문자도 인정되나요?**

- PCR 음성 확인은 보건소 또는 검사받은 의료기관에서 발송한
①PCR 음성확인 문자 통지서, ②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종이)로 가능합니다.
- 보건소에서 검사받으신 경우 '22년 1월말부터는 질병관리청 전용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PCR 음성확인서' 출력·발급이 가능하며, COOV(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앱을 통해서도 PCR 음성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 * 보건소·의료기관의 문자를 통한 PCR 음성확인서는 전자증명서 도입 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이후에는 COOV 앱 및 종이확인서만으로 운영 예정
-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는 ①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에서 발급한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②호흡기전담클리닉 지정기관에서 발급한 자체 소견서(음성결과, 의료기관명, 의사면허번호 등 기재)로 가능합니다.
 - 문자 또는 전자증명서로는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 불가합니다.

Q3. 대상시설 이용 시 코로나19 음성확인서는 사용 유효기간이 있나요?

- PCR 음성확인 문자의 효력은 통지된 내용에 포함된 “유효기간”까지이며, 유효기간이 표시되지 않은 문자의 경우에는 “발신일시”로부터 48시간이 경과한 날의 자정(24시)까지 인정됩니다.

* 예) 11.1일 오전 10시에 문자를 수신한 경우 11.3일 자정까지 유효

- PCR 음성확인 종이증명서의 경우 서류에 기재된 음성 결과 등록(보고)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경과한 날의 자정까지 효력이 인정됩니다.

※ 유효기간 계산 예시

- '21.11.12. 10:00에 음성확인 문자를 받은 경우, '21.11.14일 24시까지 유효
- '21.12.20. 23:00에 음성확인 문자를 받은 경우, '21.12.22일 24시까지 인정

-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종이)의 경우, 서류에 기재된 검사받은 시점으로부터 24시간이 경과한 날의 자정까지 효력이 인정됩니다.
(검사당일과 그 다음날까지 인정)

※ 유효기간 계산 예시

- '21.11.12. 10:00에 검사를 받은 경우, '21.13일 24시까지 유효

Q4. 코로나19 검사 비용이 있나요?

- 보건소의 PCR 검사 및 신속항원검사 비용은 무료이나, 추후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등에 따라 유료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 민간 의료기관에서 PCR검사시 검사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본인 부담임

- 지정기관이 아닌 민간의료기관 또는 호흡기전담클리닉의 PCR 검사 및 신속항원검사 시 검사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 호흡기전담클리닉의 신속항원검사 비용은 본인부담금 5,000원입니다.

〈 2-3.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완치자) 〉

Q1. 확진 후 격리해제자(완치자)임을 어떻게 증명하면 되나요?

- 신분증 지참 후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격리 해제 확인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 격리통보, 확진자관리, 격리해제통보 등 실제 격리업무를 수행한 보건소
- 추후 질병관리청 별도 누리집을 구축할 예정이며, '22.1.25일부터 전용 누리집을 통해 본인인증 후 확인서 출력·발급이 가능합니다.
 - * 다만, 시설 이용을 위한 격리해제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격리해제일로부터 6개월

Q2. 해외에서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된 경우에도 인정되나요?

- 아니요, 현재 해외에서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된 경우, 국내에서 코로나19 격리해제 확인서 또는 전자 완치확인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 이는 현재 해외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국내에서 확인할 수 없고,
 - 국가별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PCR, 신속항원검사)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Q3. PCR 검사결과 양성이 나왔는데, COOV앱 등에서 전자 코로나 19 완치확인서 발급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 COOV앱 등에서 전자 코로나19 완치확인서는 코로나19 확진 후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대상자에게 발급됩니다.
- 또한 완치확인서는 PCR 양성 진단 후 10일~180일 간 발급되며,
 -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가 오입력된 경우 발급되지 않습니다.

< 2-4. 의학적 예외자 >

Q1. 의학적 사유로 접종증명·음성확인의 예외적용을 받는 사람이 있나요?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인한 접종 금기·연기 대상자, 면역결핍자, 항암제·면역억제제 투여로 인해 백신 접종이 연기된 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에 따라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이력이 있어 백신 접종이 금기된 자,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참여자,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인과성 근거 불충분(4-1)판정자,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입원 치료(접종 후 6주 이내) 받은 자는 의학적 사유로 인한 적용 예외 대상입니다.

* 아나필락시스 반응, 혈소판감소성혈전증, 모세혈관누출증, 심근염·심낭염 등으로 관할 보건소·지자체를 통해 접종 금기·연기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

Q2. 의학적, 건강상의 이유가 아닌 개인 신념 등을 이유로 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도 접종증명·음성확인의 예외 대상이 되나요?

- 접종증명·음성확인 예외자는 의학적 사유로 접종이 불가능한 사람에 한정되며,
 - 종교적 사유 등 개인 신념에 따른 접종 거부자, 경미한 부작용(발열, 통증 등) 및 불안감에 따른 접종거부자는 예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3. 국내 백신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에 참여 중인 사람들은 어떤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에서 발급한 '임상시험 참여증명서'를 보건소에 제출하시면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Q4. 기저질환 또는 코로나19 백신 외 다른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미접종한 경우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사유로 인정되나요?

-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대부분 백신 접종의 이득이 더 크므로 기저질환을 가진 것만으로(의사 소견서를 받더라도)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또한, 백신·약품별 구성물질이 상이하므로, 코로나19 백신 외 타 백신 또는 특정 약품에 아나필락시스 등 이상반응 발생 이력으로(의사 소견서를 받더라도) 방역패스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①면역결핍자나 항암제·면역억제제 투여로 인해 예방접종연기가 필요한 경우, ②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에 따라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이력이 있어 예방접종 금기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방역패스 예외 사유로 인정됩니다.
- 가까운 보건소에 진단서 등을 제출하여 등록한 경우 종이 또는 전자 증명서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5.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증명·음성확인 예외인 경우, 확인서는 어디서 누가 발급해 주며 유효기간이 별도로 있나요?

- ①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자(아나필락시스 등)의 경우, COOV 앱 또는 전자출입명부 플랫폼(네이버, 카카오, 토스, PASS앱(SKT, KT, LG))을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본인인증 후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을 통한 전자증명서 발급은 '22.1월 말 예정

- ②기타 건강상의 이유(면역결핍, 항암제·면역억제제 투여)로 예방접종 연기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후 신분증 및 30일 이내에 발급받은 진단서(또는 소견서) 지참하여 보건소에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며, 예외확인서 발급일로부터 180일까지 인정됩니다.

- ③코로나19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이력이 있어 접종 금기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신분증 및 진단서 지참하여 보건소에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 발급 가능하며, 별도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 ④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인과성 근거 불충분(4-1)판정받은 경우, COOV 앱 또는 전자출입명부 플랫폼(네이버, 카카오, 토스, PASS앱(SKT, KT, LG))을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본인인증 후 전자증명서를 발급*가능하며, 별도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 단 보건소에 등록된 경우에만 발급 가능(전자증명서 발급 '22.1.24.~)

- ⑤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입원치료(접종 후 6주 이내) 받은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와 입원확인서를 보건소에 제출하면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 발급 가능하며, 별도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Q6. 민간 의료기관에서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접종 금기' 등록한 경우도 예외자로 인정하나요?

- 아니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예외자 중 중대한 이상반응에 의한 접종 연기·금기자는
 - 질병관리청에서 접종금기자로 해당 지자체에 통보한 사람만 해당되며, 이 경우 예방접종 시스템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Q7. 1차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질병청에서 접종금기로 결정하여 지자체에서 통보받은 경우와 민간 의료기관에서 접종금기로 등록한 경우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질병관리청에서 접종 연기·금기로 결정하여, 지자체를 통해 연기·금기 통보를 받은 경우,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확인서 발급 가능하며,
 - 보건소는 예방접종시스템에서 접종 연기·금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병청에서 접종 연기·금기 결정 → 예외확인서 발급 가능	민간 의료기관에서 접종 연기·금기 설정 → 예외확인서 발급 불가
·검색조건 주민등록번호 ·번호 Q 검색 피접종자 검색결과 주민등록번호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대상자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피접종자정보 예방접종내역 기타대상자삭제 저장 * 피접종자구분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 우편번호 상세주소 휴대전화번호 * 문자수신동의 집 전화번호 피접종자 예진결과 예진결과 등록내역 저장 예진 결과 mRNA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심근염/심낭염 의심 신고사례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연기 대상자입니다.	·검색조건 주민등록번호 ·번호 Q 검색 피접종자 검색결과 주민등록번호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대상자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피접종자정보 예방접종내역 기타대상자삭제 저장 * 피접종자구분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 우편번호 상세주소 휴대전화번호 * 문자수신동의 집 전화번호 피접종자 예진결과 예진결과 등록내역 저장 예진 결과 사유 ☐ 예방접종 가능 ☐ 예방접종 연기 ☒ 예방접종 금기 ☐ 백신의 구성물질에 심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 발생 ☒ 1차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발생

Q8. 민원인이 특정약물에 아나필락시스가 있다는 의사소견서를 지참하여 방문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예외자로 인정해야하나요?

-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예외자 중 아나필락시스로 인한 예외는
 -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중대한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있었던 경우* 또는 코로나19 백신 구성물질에 아나필락시스 등 중증 알레르기 발생이력이 있는 경우에 인정되며,
 - * 질병청에서 접종금기(또는 연기)로 통지한 대상자에 한정되며, 이 경우 의사의 진단서 없이 예방접종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함
 - 코로나19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이력이 있어 접종금기가 필요하다고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를 확인 후 예외확인서 발급 가능합니다.

Q9. 보험사 제출용 진단서만으로는 발급이 되나요?

- 예외확인서 발급을 위한 진단서에는 “면역결핍자 또는 항암제·면역억제제 투여로 인해 접종연기가 필요”* 또는 “코로나19 백신 구성물질 중증 알레르기 발생이력이 있어 접종금기자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모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 이 경우, 진단서 외 의사의 소견서도 인정 가능함
- 위의 내용 외 진단서의 형식 등에는 제한 없습니다.

Q10. 11월에 면역결핍자로 접종연기가 필요하여 유효기간이 없는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유효기간을 180일로 적용하나요?

- 12.6일(월)부터 면역결핍 및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연기가 필요한 경우, 발급일로부터 180일 효력이 인정되는 예외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이미 유효기간이 없는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기존 예외 확인서의 효력은 여전히 인정됩니다.
- 다만, 향후 예외확인서를 재발급 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80일로 제한됩니다.

Q11. 면역결핍 또는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연기가 필요한 경우, 예외확인서 유효기간을 180일보다 연장할 수 없나요?

- 면역결핍 또는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연기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진단서(30일 내 발급)가 있는 경우, 유효기간은 예외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180일로 제한됩니다.
- 면역결핍 또는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자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에 따른 접종연기자가 아니며, 접종 권고대상에 해당합니다.
 - 단, 치료일정·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현재 접종이 어려운 경우 예외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 건강상태 호전으로 접종이 가능해진 경우, 가급적 빨리 예방접종을 완료할 것이 권고되며, 180일 이후에도 접종이 어려운 경우 진단서·소견서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Q12. 건강상 이유에 의한 접종불가를 확인해 주는 의사소견서는 발급받을 때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나요?

-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발급에는 별도 비용이 발생하며, 의료기관에 따라 금액이 상이하므로, 방문하려는 기관에 문의바랍니다.
- 다만, 진단서 내용(병·의원, 진료의사, 진단명 및 사유)을 확인 후, 보건소에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는 비용은 무료입니다.

Q13.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예외확인서 발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증상으로 입원치료(접종 후 6주 이내)받은 경우, ¹⁾입원확인서와 ²⁾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증상으로 입원치료 받았다는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 ① 입원확인서 외 입원사실(입원일, 의료기관명 등) 확인 가능한 입퇴원확인서, 입원사실확인서 인정되며,
 - 입원 시 주요 증상 및 입원 기간과 관계없이 예외확인서 발급 가능합니다.(응급실 입원 포함) * 통원확인서는 인정 불가
- ② 진단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증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인정됩니다.
 - * 진단서의 구체적인 문구는 상이하여도 무방(예. 접종 후 고열로 입원)

Q14.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입원치료 받은 경우,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와 입원확인서가 필요한가요?

- 반드시 동일한 의료기관일 필요는 없으나, 이상반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동일한 기관에서 발급받을 것을 권고합니다.

Q15. 이상반응 의심증상으로 입원치료 후 피해보상 신청을 위해 입원확인서·진단서를 기 제출한 경우, 예외확인서 발급을 위해서 관련서류를 또 제출해야 하나요?

- 방역패스 예외확인서 발급절차는 피해보상 절차와 별개로,
 - 피해보상 신청을 위해 진단서 등을 제출했더라도, 방역패스 예외확인서 발급을 위해 입원확인서·진단서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 따라서, 피해보상 신청내역만으로 방역패스 예외확인서 발급은 불가합니다.
- 다만, 피해보상 신청 당시 제출한 입원확인서와 진단서가 방역패스 예외확인서 발급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동일한 입원확인서·진단서로 피해보상 신청과 예외확인서 발급 가능합니다.

Q16.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방역패스 예외자는 코로나19 예방접종도 예외인가요?

- 방역패스 예외 인정이 접종금기임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 인과성 근거 불충분(4-1) 판정자, 이상반응 입원치료자의 경우 예방접종 금기 대상이 아니므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본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예방접종 받으실 것을 권고드리며,
- 방역패스 예외자로 예방접종시스템에 등록된 경우에도,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약 및 접종력 등록 가능합니다.

[4] 확인방식 및 관리 방안

Q1.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대상시설 이용시 어떤 절차를 통해 입장 하나요?

- 코로나19 백신 ①예방접종완료, ②PCR 검사결과 음성확인 또는 예방접종증명·음성확인의 ③예외적용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수단과 신분증을 함께 제시하면 해당 시설의 이용 및 출입이 가능합니다.
 - ① **예방접종완료자**는 COOV 앱 또는 전자출입명부(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등의 전자 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종이),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 중 하나의 증명 수단과 신분증을 함께 제시
 - ② **코로나19 음성확인자**는 보건소 또는 검사받은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종이,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PCR 음성확인 문자통지서(신속항원검사X), COOV앱 또는 전자출입명부(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등의 전자 PCR 음성확인서(신속항원검사X) 중 하나의 증명 수단과 신분증을 함께 제시
 - ③ **예방접종·음성확인 예외자** 중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은 신분증만 제시,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된 사람은 관할 보건소*에서 발급한 격리해제서와 신분증, 의학적 사유로 접종이 어려운 사람은 보건소에서 발급한 예방접종·음성확인 예외 증명서와 신분증을 제시
- * 격리통보, 확진자관리, 격리해제통보 등 실제 격리업무를 수행한 보건소
- 다만, 대상 시설별로 유효한 증명 수단이 다를 수 있고, 증명수단 별로 효력이 인정되는 기간이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적용시설별 이용가능 대상>

구 분	접종완료자 (완치자 포함)	미접종자 중 예외 인정범위		
		코로나19 음성	의학적사유	18세 이하 ¹⁾
유흥시설	○	×	×	×
경마·경륜·경정/카지노	○	○	×	×
실내체육시설	○	○	○	○
노래연습장	○	○	○	○
목욕장	○	○	○	○
입원자·입소자 면회	○	○	×	×
노인·장애인 이용시설	○	○	△ ²⁾	△ ²⁾
식당·카페	○	○	○	○
멀티방(오락실 제외)	○	○	○	○
PC방	○	○	○	○
(실내)스포츠 경기(관람)장	○	○	○	○
파티룸	○	○	○	○
안마소·마사지업소 ⁴⁾	○	○	○	○
대규모 행사 (50인 이상 300인 미만)	○	○	○	△ ³⁾
학원(관악기, 노래, 연기 등) ⁵⁾	○	○	○	○

1) 2009.12.31.이전 출생자는 '22.3.1.부터 예외 적용에서 제외

2) 당사자 본인 이용 시 예외적인 경우 허용 가능(예: 12세 미만 등)

3)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학교 행사 등은 12~18세의 방역패스 예외 인정

4)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5) 서울행정법원의 방역패스 적용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결정에 따라
본안소송 판결 전까지 학원(관악기, 노래, 연기)은 방역패스 효력 정지

※ 소관부처·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강화된 방역수칙 적용 가능

Q2. 실제 접종완료 또는 음성확인자 등에 해당되나 증명서가 없는 경우, 사후적으로 제시하고 대상시설 이용이 가능한가요?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대상시설 입장할 때 코로나19 백신 ①예방접종 완료, ②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PCR,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확인 또는 예방접종증명·음성확인의 ③예외적용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과 신분증을 함께 제시 하여야 하며, 사후에 제시하는 방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Q3. 시스템 오류 등으로 COOV앱 등 전자증명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시설관리·운영자는 시스템 오류 등 불가항력의 이유로 전자증명서 확인(QR인증, 육안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구두로 이용자의 접종완료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 구두확인으로 시설관리·운영자는 방역패스 확인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
- 다만, 이용자가 접종여부 등을 거짓으로 답변하여 단속과정에서 적발된 경우, 거짓답변을 한 이용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

Q4. 무인·1인시설의 경우, 증명서 확인을 위한 상주인원이 없는데, 어떻게 이용자의 접종완료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나요?

- 시설관리·운영자는 이용자에게 해당 시설이 방역패스 적용시설로 방역패스 소지자에 한해 이용 가능함을 안내(방역수칙 포스터 부착, 음성안내 등)하고,
- 원활한 증명서 등 확인을 위해 아래의 조치를 취해야 함
 - (QR인증) 출입문 구역 등에 QR인증을 위한 휴대폰·태블릿 PC*를 상시 비치하여야 함
 - * 휴대폰·태블릿 PC는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설치, 작동 중이어야 함
 - (육안확인) 증명서·확인서의 인적사항·유효기간 등 육안확인

Q5. 인정되는 신분증의 종류는 무엇이 있나요?

- 성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기재된 것에 한함), 기간만료 전 여권,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등의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의 신분증

- 18세 이하 청소년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 확인서(유효기간 내), 청소년증, 유효기간 내 청소년증(청소년증 발급확인서), 기간만료 전 여권, 학교생활기록부 개인 신상 페이지(학교장 확인 필요), 학생증, 재학증명서, 재학 중인 학교에서 발급하는 신분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영·유아 등 육안으로 보아 18세 이하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분증 확인 없이도 시설 이용 가능합니다.

Q6. 전자증명서 QR코드 스캔이 아닌 육안 확인시, 신분증과 대조하여 확인해야 하나요?

- 아니오, 발급 시 본인인증이 필요한 전자증명서를 육안확인하는 경우, 신분증과 대조 확인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단, 종이증명서 육안 확인 시, 신분증 대조확인이 필요합니다.

Q7. 시설책임자(사업자)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해야 하나요?

- 아니오, 방역패스 적용시설 책임자(사업자)는 증명서·확인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 단 시설별 이용가능한 대상자 및 증명서별 유효기간이 다르므로,
 - 사업자는 본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 및 증명서·확인서의 종류를 숙지 및 입장 전 이용자의 증명서 등을 확인바랍니다.

Q8. 현장점검·단속 시 접종증명·음성확인 증명서의 위변조 여부는 어떻게 확인 가능한가요?

- 접종증명·음성확인 증명서 중 COOV 등 전자 증명서는 QR코드 인식 시 위·변조 여부가 검증됩니다.
- 종이 예방접종 증명서(또는 스티커)는 발급경로에 따라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nip.kdca.go.kr>), 정부24에서 진위확인 가능합니다.
 - * 오프라인 또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발급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정부24 발급 → 정부24에서 진위여부 확인
- 증명서 등의 위·변조 여부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집중 점검을 통해 단속할 예정이며, 적발시 관계 법률에 따라 고발 등 무관용 원칙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Q9. 접종증명·음성확인 증명서 등을 위변조 또는 위변조한 증명서의 활용한 경우, 처벌 받나요?

- 접종증명·음성확인 증명서 등을 위·변조하였을 경우 형법 제225조·제231조, 위·변조한 예방접종증명서 등을 사용하였을 경우 형법 제229·제234조에 따라 각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 증명서 등을 위·변조한 사람과 위·변조한 증명서 등을 사용한 사람이 동일인일 경우 상기 벌칙 병과 적용될 수 있습니다.
- * (예시)
 - (증명서 등 위조) 예방접종증명서 발권자의 명의 등을 도용하여 종이 또는 전자증명서 자체를 허위로 만드는 것 등
 - (증명서 등 변조) 진본 증명서 등에 이름 등을 수정하는 것 등
 - (위·변조한 증명서 등 사용) 타인 또는 본인이 위·변조한 예방접종증명서를 사적모임 인원 적용 제외 인증 등 목적으로 사용
- 또한, 증명서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였을 경우 형법 제23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 (예시) 본인의 예방접종증명서가 아닌 다른 사람의 예방접종증명서를 사적 모임 인원 적용 제외 인증 등을 목적으로 사용

Q10.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대상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증명서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관리자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 유흥시설 등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대상 시설 입장 시 또는 사적 모임제한 초과 인원이 해당 시설 입장 시 시설의 관리·운영자는 예방접종증명서·음성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입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증명서 등을 제시하지 않고 입장을 하는 경우 관할 시·군·구 또는 관할 경찰서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Q11. 접종증명·음성확인 없이 대상시설을 이용하다 적발되는 경우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는 각각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설에서 관리·운영자가 증명서 등을 확인하지 않고 입장시킨 경우 또는 이용자가 증명서 등을 제시하지 않고 이용하다 적발되는 경우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시설의 관리·운영자 및 이용자에게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

** 감염병예방법 제83조제2항(관리자·운영자에 대한 과태료), 제83조제4항(이용자에 대한 과태료), 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 시행규칙 제42조(행정처분의 기준)

- (과태료) : (이용자) 위반 차수별 각 10만원
(관리·운영자)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시 300만원
- (행정처분) : (1차위반) 운영중단 10일 → (2차) 20일 → (3차) 3개월 → (4차) 폐쇄명령

Q12.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이 아니나, 자율적으로 증명서·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 위반시 처벌을 받나요?

-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방역패스를 적용하여 방역 수준을 강화할 수 있으나, 자율 조치로 위반시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증명서 등을 위·변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적인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Q13. 헬스장, 학원 등에서 회원들 출입 시 마다 방역패스를 확인해야 하는지?

- 원칙적으로 시설운영·관리자는 상주, 상시 방문 여부와 관계없이 시설 이용 전 이용자의 접종증명서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QR체크인을 하는 경우, 전자출입명부와 함께 접종완료 사실이 확인되므로 간편하게 출입명부 작성과 방역패스 확인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 헬스장·학원과 같이 회원권·수강증 등으로 이용자 정보 관리가 가능한 경우, 시설 관리·운영자는 사전에 접종완료일 및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합리적 범위 내에서 주기적으로 접종증명서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상기와 같이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되었음에도 이용자를 출입하게 하거나, 미접종자가 이용하게 한 경우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시설의 관리·운영자에게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

** 감염병예방법 제83조제2항(관리자·운영자에 대한 과태료), 제83조제4항(이용자에 대한 과태료), 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 시행규칙 제42조(행정처분의 기준)

- (과태료) : (이용자) 위반 차수별 각 10만원
(관리·운영자)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시 300만원
- (행정처분) : (1차위반) 운영중단 10일 → (2차) 20일 → (3차) 3개월 → (4차) 폐쇄명령

- 또한 이용자는 주기적 출입이 허용되더라도 방역패스를 항상 소지하여야 하며, 시설 관리자의 요구 또는 지자체의 현장점검 시 접종증명서 등을 즉시 제시해야 합니다.(현장에서 즉시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

주요 서식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증명서(종이 증명서)

제 호
No.

예방접종증명서

Certificate of Immunization

[illegible]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33조의4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예방접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We hereby certify that all the above vaccinations were performed under Article 27 of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and Article 22 of the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above-mentioned Act.

년 월 일
 Year month day

질병관리청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의료기관장

직인
Seal

Governor of ()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or
The head of () Si/Gun/Gu, The head of () medical institution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서식 2

코로나19 예방접종확인서(종이 증명서)

제 호
No.

COVID-19 예방접종확인서 Confirmation of COVID-19 Vaccination

성명 Name		생년월일 Date of Birth (Month/Day/Year)	
		성별 Sex	
주소 Address			
접종명 Vaccine	접종차수 Vaccination Series	접종일 Date (Month/Day/Year)	접종국가/기관 Country/Clinic

위 사람은 위와 같이 예방접종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예방접종확인서는 해외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에게 국내 사용을 목적으로 국문으로 제한적으로 제공됩니다. 출국 등 국외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접종국가에서 제공한 예방접종증명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예방접종확인서 위변조, 위변조한 예방접종확인서 행사 시 「형법(제225조, 제229조)」에 따라 형사처벌*될 수 있으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83조)」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과태료 10만원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제11조 및 제46조)」에 따라 입국불허 또는 강제출국이 추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예방접종확인서 위변조 시 10년 이하의 징역, 위변조한 예방접종확인서 행사 시 10년 이하의 징역 (동일인인 경우 경합범으로 처벌 가능)

※ 또한, 예방접종확인서의 위변조, 위변조한 확인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본인의 확진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전파된 경우, 관계기관으로부터 본인에게 본인 및 전파된 사람의 진료비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 Fabrication, falsification, or fraudulent submission of this document will lead to imprisonment of up to 10 years (punishable as concurrent crimes), a fine of up to 100,000 KRW, and/or claims for damages such as the cost of medical care provided to the patients infected as a result. Deportation or entry ban will also be imposed in the case of foreign nationals.

* Relevant laws: Criminal Act (Articles 225, 229),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Articles 49, 83), Immigration Act (Articles 11, 46)

년 월 일
Year month day

지자체장

직인
Seal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제 호
No.

COVID-19 예방접종 확인서
Confirmation of COVID-19 Vaccination

성명 Name	HONG GILDONG		생년월일 Date of Birth (Month/Day/Year)	
환자번호 Patient ID			성별 Sex	
주소 Address				
접종명 Vaccine	접종차수 Vaccination Series	접종일 Date (Month/Day/Year)	접종국가/기관 Provider/Clinic	

위 사람은 위와 같이 예방접종하였음을 확인합니다.

We hereby acknowledge that the above-identified person has been vaccinated as above.

- 예방접종 확인서는 해외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에게 국내 사용을 목적으로 제한적으로 제공됩니다.
- This document is issued to individuals who are vaccinated outside of the Korean Government's COVID-19 vaccination program and is only valid within the Republic of Korea.

※ Fabrication, falsification, or fraudulent submission of this document will lead to imprisonment of up to 10 years (punishable as concurrent crimes), a fine of up to 100,000 KRW, and/or claims for damages such as the cost of medical care provided to the patients infected as a result.

* Relevant laws: Criminal Act (Articles 225, 229),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Articles 49, 83)

년 월 일
Year month d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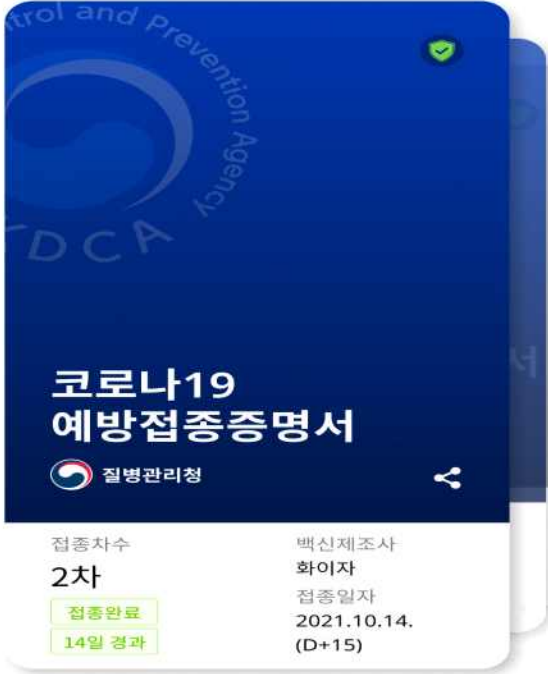
USFK 사령관
USFK Commander

직인
Seal

질병관리청장
KDCA Commissioner

직인
Seal

서식 3 예방접종 증명 관련 전자 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예방접종확인서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질병관리청 접종차수 2차 접종완료 14일 경과 백신제조사 화이자 접종일자 2021.10.14. (D+15)	 코로나19 예방접종확인서 질병관리청 접종차수 2차 해외접종완료 백신제조사 모더나 접종일자 2021.04.21. (D+211)
PCR음성확인서	완치확인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질병관리청 남은 유효시간 48시간 검사일자 2021.11.15. 만료일자 2021.11.17.	 코로나19 완치확인서 질병관리청 남은 유효일자 180일 확진일 2021.09.15. 유효기간 2022.03.15.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성명(성별) : ○ ○ ○ (남,여)
YYYY-MM-DD

생년월일 :

검사일자 : YYYY-MM-DD

검체종류 : 비인두(구인두)도말

검사방법 : RT-PCR

검사결과 : 음성

검사결과 등록일시 : YYYY-MM-DD HH:MM

※ 유효기간 : 검사결과 등록일시로부터 48시간이 경과한 날의 자정까지

상기인에 대한 검사결과를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 보건소에서 발급된 음성확인서는 「감염병예방법」 제4조에 따라 코로나19 발생과 유행
방지와 방역을 위한 국내용 공익 목적으로 한정됩니다.

검사의뢰기관 : ○ ○ ○ 보건소(TEL: 00-000-0000)

검사기관 : ○ ○ ○

* 검사결과 등록일시 :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에서 검사기관이 검사결과를 등록한 후 확인한 일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성 명 (성 별) : ○ ○ ○ (남,여)
YYYY-MM-DD

생 년 월 일 :

검 사 일 자 : YYYY-MM-DD

검 체 종 류 : 비인두(구인두)도말

검 사 방 법 : RT-PCR

검 사 결 과 : 음성

검사결과 등록일시 : YYYY-MM-DD HH:MM

※ 유효 기 간 : 검사결과 등록일시로부터 48시간이 경과한 날의 자정까지

상기 인에 대한 검사결과를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검사의뢰기관 : ○ ○ 병원(TEL: 00-000-0000)

검 사 기 관 : ○ ○ ○

서식 5

격리해제확인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0-1판 (서식-20호)

격리해제 확인서 CONFIRMATION OF RELEASE FROM ISOLATION			
성명 NAME		생년월일 DATE OF BIRTH	
격리해제시 장소명 LAST PLACE OF ISOLATION BEFORE RELEASE	(예시) 자택, ○○의료원 또는 중부권·국제1 생활치료센터 (Example: Home, ○○ Medical Center, Central Region/International 1 Residential Treatment Center, etc.)		
격리시작일 ISOLATION START DATE		격리해제일 ISOLATION END DATE	
상기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해제 기준을 충족하여 격리해제 되었음을 확인합니다. This is to confirm that the above-identified person has been released from isolation according to the criteria for releasing COVID-19 case-patients from isolation. ※ 격리해제 기준에 따라 격리해제된 확진자는 추가적인 감염전파의 우려가 없으며, 본 격리해제 확인서는 PCR 음성확인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Persons who are discharged/released from isolation according to the COVID-19 isolation release criteria no longer pose a risk for transmission to others. This document may be accepted in lieu of proof of negative PCR test result.			
발행일: (예시) 20 .○○.○○ △△ 보건소장 (인)			

서식 6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종이 증명서)

접종증명 · 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

성명		생년월일	
유효기간	(기타 건강상의 이유자는 발급일로부터 180일을 더해 만료일을 표시)		

상기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접종증명 · 음성확인제
예외 대상임을 확인합니다.

- ※ 본 증명서를 지참한 경우 별도의 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 없이
접종증명 · 음성확인제 적용 시설을 출입 ·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동 확인서의 경우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출입, 의료기관 · 요양시설 등의
환자 · 입소자 면회, 노인 · 장애인 시설의 출입*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일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례(12세 미만 아동 장애인 등)는 사용 가능

발행일: 20 . . .

△△ 보건소장 (인)

접종증명 · 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
(접종완료 완치자)

성명

생년월일

유효기간

상기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접종증명 · 음성확인제
예외 대상임을 확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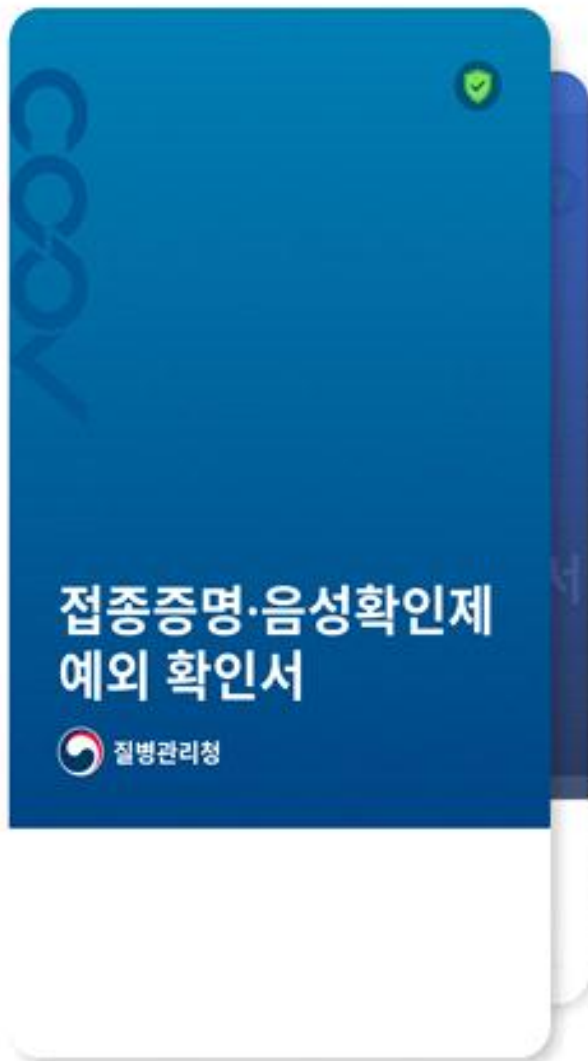
※ 본 증명서를 지참한 경우 별도의 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 없이
접종증명 · 음성확인제 적용 시설을 출입 ·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발행일: 20 . . .

△△ 보건소장 (인)

서식 7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전자증명서)





KoNECT-0000000-000000



임상시험 참여증명서

성 명 : 홍길동

생 년 월 일 : 0000.00.00

위 사람은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에
참여하였기에 이를 증명합니다.

2021.00.00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이사장



※ 본 증명서의 진위 여부는 「코로나19 임상시험포털」 홈페이지 > 임상시험참여 > 참여증명서 진위 확인 > 문서 진위확인 서비스 또는 QR코드 진위확인 서비스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서식 9

접종증명 · 음성확인제 관련 확인서 등의 발급대장

[엑셀 양식]

□ 시도명 : ○○북도

접종증명 · 음성확인제 관련 확인서 발급대장

기관 담당자 :

연락처 :

순번	시도	시군구	보건소명	발행일	성명	생년월일	1) 증명서 종류	2) 비고
1	충북	청주시	○○보건소	211121		891101	③	의학적 사유
2	충북	청주시	○○보건소	211122		781101	③	임상시험 참여자
3	충북	청주시	○○보건소	211125		691101	①	

1) 증명서 종류란에는 해당하는 번호만 기입 : ① PCR 음성 확인서, ② 격리해제확인서,
③ 접종증명 · 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

2) 비고란에는 증명서의 종류가 ③접종증명 · 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인 경우
발급이유를 (임상시험 참여자, 의학적 사유) 중에서 택하여 기입

서식 10

접종증명·음성확인제 통합 확인서(온라인출력용)

■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 제1-1판 (서식-00호)

발급번호(No.) : 0000-0000-0000-0000

코로나19 접종증명·음성확인제 통합 확인서

성명 Name		생년월일 Date of Birth	
		성별 Sex	

구 분	해당 여부	인정 유효기간
예방접종 완료자	O/-	
완치자	O/-	
PCR 음성	O/-	
의학적 사유 예외자	O/-	

상기인은 위와 같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대상임을 확인합니다.

※ 주의사항

- 시설별 이용 가능 대상시설이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년
Year

월
month

일
day

질병관리청장

직인
Seal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성 명 (성 별) : ○ ○ ○ (남,여)

생 년 월 일 : YYYY-MM-DD

검 사 일 자 : YYYY-MM-DD

검 체 종 류 : 비강도말

검 사 방 법 : 신속항원검사(자가검사용)

검 사 결 과 : 음성

※ 유효 기 간 : 검사 결과 음성 확인부터 24시간이 경과한 날의 자정까지

상기 인에 대한 검사결과를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 보건소에서 발급된 음성확인서는 「감염병예방법」 제4조에 따라 코로나19 발생과 유행 방지와 방역을 위한 국내용 공익 목적으로 한정됩니다.

검 사 기 관 : ○ ○ ○ 보건소
(TEL:00-000-0000)

붙임 1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시설**('22.1.18. 중앙사고수습본부)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대상시설 이외의 시설에 관한 방역수칙은 소관 부처의 개별 지침에 따름**

가.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 원칙

- 감염 위험도가 높은 1그룹*, 2그룹 및 3그룹 중 실내 밀집으로 인한 감염 가능성이 우려되는 일부 시설은 **접종완료자, PCR음성자 등****으로 이용 제한

*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른 시설 그룹 기준

** 유흥시설의 경우 접종완료자만 이용 가능

※ 감염 위험도 높은 시설 및 활동 기준('21.11.1)

- ▶ (시설) ①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식사, 음주, 음료, 목욕 등) 실내, ② 지하 등 환기 미흡 시설, ③ 거리두기(2m) 유지가 어려운 실내, ④ 미접종 연령군(17세 이하) 다빈도 이용시설
- ▶ (활동) ① 비말 생성이 많은 행동(운동, 노래, 합성 등), ② 장시간 실내 체류

□ 대상시설

-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카지노
- 식당·카페류(일반음식, 휴게, 제과), 멀티방, PC방, 마사지업소·안마소,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파티룸
- 학원(관악기, 연기, 노래에 한함) 등

□ 적용범위

-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

나. 감염 취약시설

□ 원칙

- 감염 시 사망위험이 높은 환자·입소자에 대한 면회, 노인·장애인 등 고위험군의 여가 및 생활시설*은 접촉자 중심으로 이용 제한

* 경로당, 노인복지관, 치매보호시설,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등

□ 대상시설

-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 등 고령층 이용 및 방문시설

* 의료기관 요양병원의 경우 단순방문, 외래진료자는 적용 대상 아님

□ 적용범위

- 기관별 적용 대상 및 범위

구분	적용 대상	비고*
의료기관,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 입원 환자 면회 시 - 입소자 면회 시	- 외래진료 및 단순방문자 (<u>접종증명·음성확인 대상 아님</u>)
중증장애인 시설, 치매보호시설,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 모든 시설 이용자	

붙임 2
호흡기전담클리닉 지정기관(총 43개소)

* '22.1.24 기준

시도 (개소)	시군구 (개소)	기관명	종별	주소
광주 (23)	광산구 (11)	하남성심병원	종합병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용아로 259, (산정동)
		첨단종합병원	종합병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중앙로170번길 59, (쌍암동)
		KS병원	종합병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왕버들로 220, (수완동)
		광주수완병원	종합병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370, (수완동)
		광산하나아동병원	병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신로 141, 3~9층 (수완동)
		하나아동 병원	병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784 (월계동)
		수완센트럴병원	병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로 6, A동1,3,5,6층/B동동 (신가동)
		한마음병원	병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도로 160, 3,4층 (도산동)
		광산수완미래아동병원	병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162 (운남동, 광산미래아동병원)
		하나로이비인후과의원	의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목련로153번길 79, 2층 (운남동)
		첨단메디케어의원	의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로 223-8, 110동 2층 (쌍암동, 중흥S클래스 리버시티 주상복합 아파트)
	남구 (4)	미래아동 병원	병원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131 (주월동)
		광주백병원	병원	광주광역시 남구 독립로54번길 26, (백운동)
		예사랑아동 병원	병원	광주광역시 남구 서문대로 683 (진월동)
		더힐이비인후과의원	의원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중앙로 51, 3층 (봉선동)
	동구 (1)	씨엠맘삼성병원	병원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689, 해피뷰삼성메디타워 지하1층,지상2~6층 (학동)
	북구 (4)	광주병원	종합병원	광주광역시 북구 면앙로139번길 51, (두암동)
		북구미래아동병원	병원	광주광역시 북구 설죽로 346 (오치동)
		아이맘아동 병원	병원	광주광역시 북구 하서로 400, 2,3,4,5층 (양산동)
		에스케이제이병원	병원	광주광역시 북구 갈마로 27 (풍향동)
	서구 (3)	서광병원	종합병원	광주광역시 서구 금화로59번길 6, (금호동)
		우리아동 병원	병원	광주광역시 서구 풍금로 167 (금호동)
		아이퍼스트아동 병원	병원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129, 2~6층 (농성동)

전남 (15)	고흥군 (2)	의료법인영성의 료재단 고흥종합병원	종합병원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고흥로 1935
		의료법인장호의 료재단 녹동현대병원	병원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차경구령목길 215
	광양시 (1)	다나소아과의원	의원	전라남도 광양시 광장로 147 (중동)
	나주시 (1)	엔에이치미래아 동병원	병원	전라남도 나주시 중야2길 29-0, (빛가람동)
	목포시 (2)	목포시의료원	종합병원	전라남도 목포시 이로로 18, (용해동)
		목포아동병원	병원	전라남도 목포시 옥암로 149, (상동)
	무안군 (1)	목포의원	의원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4로 71
	순천시 (1)	이노스이비인후 과병원	병원	전라남도 순천시 봉화3길 14-28, (조례동)
	여수시 (4)	여수전남병원	종합병원	전라남도 여수시 좌수영로 49, (광무동)
		의료법인한마음 의료재단 여수제일병원	종합병원	전라남도 여수시 쌍봉로 70, (학동)
		여천전남병원	종합병원	전라남도 여수시 무선로 95 (선원동)
		여수한국병원	병원	전라남도 여수시 여천체육공원길 10, (신기동)
	영암군 (2)	삼호제일병원	병원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신향로 92
		영암한국병원	병원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오리정길 8
	화순군 (1)	화순성심병원	병원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만연로 31
경기 (5)	평택시 (2)	하나의원	의원	경기도 평택시 송탄로 410, 2,3,5,6층 (지산동)
		365일열린소사 벌연합의원	의원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951, 디에이치빌딩 1-3층 (비전동)
	안성시 (3)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종합병원	경기도 안성시 남파로 95 (당왕동)
		안성성모병원	종합병원	경기도 안성시 시장길 58 (서인동)
		푸른이비인후과 의원	의원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공도로 83, 2층

붙임 3 관련 법률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환자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2.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 17. (생략)

③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감을 포함한다)는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12호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할 지역에 대한 교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하는 것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 2의3. ~ 14. (생략)

② (생략)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중단 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장소나 시설의 폐쇄 또는 운영 중단 명령을 받은 관리자·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 ⑥ (생략)

⑦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9조의2(감염취약계층의 보호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호흡기와 관련된 감염병으로부터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및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대상(이하 “감염취약계층”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감염취약계층에게 의료·방역 물품(「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 한정한다)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감염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소득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감염병의 종류, 감염취약계층의 범위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83조(과태료) ① (생략)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